

주요국의 관세사 제도 운영 현황

2012. 12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연구원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수 영 관세사

김 미 영 관세사

목 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의 관세사 제도	9
1. 개관	9
2. 직무 범위	10
3. 자격 취득 방법	14
가. 자격 요건	14
나. 관세사 시험	15
다.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20
4. 등록 및 업무의 개시	21
가. 관세사 등록	21
나. 실무수습제도	22
다. 업무의 개시	23
5. 의무와 책임	28
가. 의무	28
나. 징계 및 벌칙	29
6. 한국관세사회	33
III. 주요국의 관세사 제도	35
1. 미국	35
가. 개관	35
나. 직무 범위	37
다. 자격 취득 방법	39

라. 허가 및 업무의 개시	42
마. 의무와 책임	45
바. 미국 관세사·국제운송업자협회	50
2. 호주	52
가. 개관	52
나. 직무 범위	53
다. 자격 취득 방법	54
라. 업무의 개시	62
마. 의무와 책임	64
바. 호주 관세사·국제운송업자 협회	70
3. 캐나다	72
가. 개관	72
나. 직무 범위	73
다. 자격 취득 방법	75
라. 면허 및 업무의 개시	82
마. 의무와 책임	84
바. 캐나다 관세사협회	86
4. 일본	87
가. 개관	87
나. 직무 범위	88
다. 자격 취득 방법	90
라. 허가 및 업무의 개시	94
마. 의무와 책임	97
바. 일본 통관업연합회	100
5. EU	101
가. 개관	101
나. 통관대리의 유형	102
다. 프랑스의 관세사 제도	104

라. 기타 국가들.....	111
IV.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관세사 제도 비교.....	116
1. 국제비교.....	116
가. 관세사 제도에 관한 법령.....	116
나. 직무 범위.....	117
다. 자격 취득 방법.....	118
라. 등록 및 업무의 개시.....	123
마. 의무와 책임.....	124
바. 관세사회의 기능과 역할.....	126
2. 시사점.....	132
가. 관세사 직무.....	132
나. 자격 요건.....	135
다. 시험 제도의 개선.....	136
라. 지속적 재교육 실시.....	140
참고문헌.....	142
부록. 주요국의 관련 서식.....	144

표 목 차

〈표 II-1〉 최근 관세사시험 지원자 및 합격자 현황	16
〈표 II-2〉 우리나라 관세사 자격 시험과목	17
〈표 II-3〉 특별전형 및 연수의 특별교육 및 시험	19
〈표 II-4〉 사무소 유형별 등록 관세사 개업 현황	23
〈표 III-1〉 미국 관세사 시험 과목	40
〈표 III-2〉 호주 관세사 자격 취득 요건	57
〈표 III-3〉 호주 관세사 자격 공인교육과정 필수과목	59
〈표 III-4〉 호주 관세사 자격 유형	63
〈표 III-5〉 CPD 이수 취득점수 예시	68
〈표 III-6〉 최근 관세사 전문시험 응시자수 및 점수 현황	76
〈표 III-7〉 캐나다 관세사 전문시험 과목	77
〈표 III-8〉 일본의 통관업체 및 영업소의 수	87
〈표 III-9〉 2012년 세관별 통관업체 수 현황	87
〈표 III-10〉 최근 통관사 시험 응시자 및 합격률 현황	91
〈표 III-11〉 통관사 시험 과목 및 시간	92
〈표 IV-1〉 관세사의 직무범위 국제비교	118
〈표 IV-2〉 관세사 관련 제도 국제비교	128
〈표 IV-3〉 관세사 시험제도 국제비교	131

I. 서론

- 세계경제 불황 속에서도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 무역 규모 8위에 진입함¹⁾
 - 2012년 우리나라 연간 수출은 5,482억달러, 수입은 5,195억달러로 집계됨
 - 2013년 세계경제의 회복, 신흥국의 성장에 힘입은 수출 증가가 기대되며, 소비심리 회복과 환율 하락 등에 따라 수입도 완만한 증가가 전망됨

- 이러한 국제 물품 교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수출입 통관 절차이며, 관세사는 수출입업자의 위탁을 받아 업체와 세관 사이에서 통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자격사업

- 관세사는 수출입업체에 비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게 하며, 세관에는 보다 전문적인 신고로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 수출입업체로 하여금 제 규정에 따른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 등 국제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수출입업체가 처한 거래 환경과 통관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상 및 통관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관세사의 역할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관세사의 역할은 고유 업무인 통관 업무 및 관세법상 행정 대리에서, FTA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업무,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컨설팅 업무, 관세 평가 등 전문적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관세사 제도와 관련하여, 주요국

1)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12년 수출입 동향 및 2013년 전망」, 2013. 1. 1

의 유사 자격 존재 여부를 비롯하여 본 자격의 취득 방법과 운영 방식, 자격사의 의무와 책임, 협회의 기능이나 역할 등에 대해 검토해 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됨

○ 모든 국가에 관세사 유사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중국, 미국, 일본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와 비교해 봄으로써 제도상의 개선 사항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제Ⅱ장에서 우선 우리나라의 관세사 자격 취득 방법, 시험 제도와 자격증의 등록 및 업무 개시,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제Ⅲ장에서는 관세사 제도가 존재하는 주요 국가인 미국과 호주, 일본, 캐나다, 일부 EU 국가의 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파악해 보도록 함

□ 제Ⅳ장에서는 조사된 주요국의 관세사 제도 관련 내용을 비교해 봄으로써 각 국가 간 제도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함

○ 국가별 통관 절차가 모두 다르고 도입 시기가 상이하여 각자 고유한 형태로 제도가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절대적 비교는 어려움

○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적용 가능한 개선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해 봄

II. 우리나라의 관세사 제도

1. 개관

- 관세사(關稅士)는 「관세사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화주 또는 관세 납세의 무자를 대리하여 통관절차를 이행하거나 관세법상 불복청구의 대리를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전문 직업인임
 -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직무를 대행함

- 우리나라의 관세사 제도는 1949년 「관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세관화물취급인’²⁾ 제도를 두어 통관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1967년 「관세법」의 개정으로 ‘통관업자’³⁾ 제도로 변경하여 운영됨
 - 최초 우리나라 관세사 제도는 당시의 일본 화물취급인 제도를 도입한 것임

- 현재의 관세사 제도의 도입은 1975년 12월 관세법 개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본 개정 관세법에 따라 1976년 한국관세사회가 발족되었음
 - 1995년에는 「관세법」의 일부로 되어 있던 관세사 제도를 별도의 「관세사법」⁴⁾으로 제정 공포함으로써 199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관세사의 자격을 가지는 자는 관세사 일반 시험에 합격한 자와 특별전형에 의해 합격한 자이며,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일반 시험 전형으로 관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6개월 범위 내 실무 수습을 거쳐

2) 관세법(법률 제67호, 1949.11.23 제정) 제172조 내지 제188조

3) 관세법(법률 제1976호, 1967.11.29 개정) 제156조 내지 제171조

4) 법률 제4984호

야 등록이 가능함

2. 직무 범위

- 관세사의 직무는 「관세사법」 제2조(관세사의 직무)에 규정되고 있으며 관세사는 타인의 의뢰에 따라 각종 대리 및 절차 이행 업무를 수행함
 - 관세사의 직무 및 업무 범위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관세사법 이외에도 「관세사의 직무수행 고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 고시」,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등이 존재함
- 또한 「관세사법」 제3조(통관업의 제한) 규정에 따라 동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의 고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

1)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 확인과 세액 계산

- 신속통관을 위한 현행 신고납부제도⁵⁾하에서 국가의 징세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세액과 직결되는 과세가격의 정확성과 세율 결정에 필요한 품목 분류의 정확성과 전문성이 요구됨
- 특히 제품의 세번을 결정하여 세율을 결정짓는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Harmonized System)’를 따르며, 본 제도에 따른 물품의 분류는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함
 - 동일한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건 같은 세번에 분류되도록 하기 위해 품목분류표상 따라야 할 규칙인 통칙, 주(Legal Note) 등의 국제적 약속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가장

5) 수입물품의 관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에는 신고납부방식과 부과지방식이 있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수입 당사자인 화주가 해당물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신고하여 그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가 일반적임

적합한 세번을 찾는 작업에 전문성이 요구됨

- 국가 간 무역에서 활용하는 HS 분류체계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신속한 HS 분류와 정확한 신고는 납세의무자와 세관 모두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또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는 ‘WTO 관세평가협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세법의 법정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 등은 회계학 분야의 개념 또는 일반적인 통념과 상이할 수 있어 관세 관련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음
- 「관세법」 제86조⁶⁾ 규정에 따라 관세사는 수출입 신고 예정 물품에 대해 신고 전, 품명·규격·용도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견본 등을 제출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품목분류를 심사받을 수 있음
 - 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관세사 등(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임

2)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신고와 관련 절차의 이행

- 수출입의 신고에 있어 화주의 직접 신고도 가능하나, 현재 수출입 건의 거의 95% 이상은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신고되고 있음
- 수출입 통관 업무를 업무의 일부로 하는 일반적 기업의 경우 수출입 신고와 관련 절차 이행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안정적인 전산망을 갖추고 전문성을 가진 관세사에게 신고 대리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음
 - 대리인을 통한 신고는 세관의 서류 제출 및 물품 검사 요청 건에 대하여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업무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음

6)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또한, 일반 수출입 기업은 수시로 변경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의 규정의 세부 내용을 모두 파악하여 대응하기 어려움
- 관세사 사무소, 법인 등 통관 대리인은 세관(稅關)과 유기적 관계로 항상 소통하고 있으므로 주요 개정 사항이나 업무 요청 사항 등을 수시로 연락받아 일을 처리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3)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관세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절차로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는데, 관세사는 이러한 불복청구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4) 관세 및 수출입신고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수출입자(民)와 세관(關) 사이에서 업무를 행하는 관세사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와 통관 과정 관련 사항에 대해 수출입 업자에게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업체가 활용 가능한 혜택(예: FTA 특혜세율, 감면 등)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면서도 적법하고 성실한 통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 FTA 확산으로 인해 FTA 특혜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 절차, 인증수출자 획득을 도움으로써 업체가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재의 거래선 변경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구축으로 업체의 이익 극대화를 모색함
- AEO 인증을 획득하고자 수출입 업체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여 관세청으로부터 AEO 인증을 원활히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하며, 이로써 인증을 획득한 업

체에 대해 공인업체로서의 이미지 향상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5)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 청구의 대리

- 관세사는 「환급특례법」⁷⁾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등 환급 청구에 대해 청구 대리권을 가짐으로써, 원자재 계산이나 수입 시 납부했던 세금 계산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함
 - 관세사는 간이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 중 하나의 방법으로 관세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급을 신청하며, 그 외 분할증명서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의 발급 신청도 대리함

- 관세사는 환급 대상 수출 여부, 수출용 원자재 여부, 수입신고필증 등의 점검으로 관세 환급 관련 상담을 이행함

- 환급 업무에 있어 사내 전문 인력 부재로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정확한 금액 산정의 난해함으로 환급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으나, 화주의 수출입정보를 지닌 관세사가 이를 대리함으로써 도울 수 있음
 - 환급 절차가 복잡하여 환급을 포기하거나, 신청 방법과 시기를 알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세사의 상담 및 청구 대리를 활용하여 업체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됨

6) 기타

- 그 외에 관세사는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권을 지니며,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관세법」 제38조 제3항) 권한을 가짐

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기업심사 시 수출입 업체는 세관에 의해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감면, 환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사받게 되는데, 이때 관세사는 수출입 업체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전에 이를 점검하여, 심사에 대비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함
- 또한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관세법」 제226조),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의 업무를 수행함
- 통관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세사 업무도 변화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관세사법」에 규정된 관세사의 직무 이외에도 수출입과 관련된 복잡·다양한 확장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사를 통한 업무 수수료율이 자율화되어 있으므로 법정 수수료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3. 자격 취득 방법

가. 자격 요건

- 우리나라의 관세사 자격 요건은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관세사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결격사유자도 자격 시험 응시는 가능함
- 미성년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됨
- 또한,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들 법률의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은 관세사가 될 수 없음

- 「관세사법」의 처벌 규정 및 「관세법」 처벌규정(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결격사유 대상임
 - 다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함
-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세사가 될 수 없음

나. 관세사 시험

- 무역 및 통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관세청장이 시행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관세사 시험의 소관부처는 관세청 통관기획과이며, 시험의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등 일부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음
- 시험 출제위원은 대부분 관세청에서 관련 학회와 협회 등과 논의해 출제위원 인력풀을 구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산업인력공단과 최종 논의해 선정함
 - 출제위원은 크게 사전출제위원과 선정출제위원으로 구성되며, 사전출제위원이 실제 시험보다 많은 수의 문제를 넉넉히 출제하면 선정출제위원들이 합숙을 하면서 문제를 선택하는 방식임
- 관세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관세청장은 시험의 일시·장소·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함⁸⁾
 - 통상적으로 1차 시험은 매년 4월, 2차 시험은 매년 7월 경에 치러지고 있음

8) 시험 응시료는 1만원이며, 현금 또는 전자방식으로 납부함

- 관세청장은 관세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 관세청은 2003년 ‘최소합격인원제’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매년 일반전형의 경우 75명 정도의 관세사를 선발하고 있음

〈표 II-1〉 최근 관세사시험 지원자 및 합격자 현황

(단위: 명)

		2008년 (25회)	2009년 (26회)	2010년 (27회)	2011년 (28회)	2012년 (29회)
일반전형	최초 지원자	1,522	1,596	1,765	1,894	2,055
	1차 합격자	469	242	187	225	274
	2차 응시자 ¹⁾	452	469	327	343	419
	최종 합격자	75	86	75	75	75
특별전형 ²⁾	합격자	54	—	22	26	37

주: 1) 2차 응시는 이전 년도 1차 합격자 및 당해 연도 1차 합격자 모두 가능함

2) 특정분야의 일정경력 이상의 공무원 및 퇴직자 전형으로 일반 시험과 상이함

자료: 관세청, 조세일보, 세정신문

1) 시험의 형식

- 우리나라의 관세사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1차는 5지선다형 객관식 필기, 2차는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러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차기 연도)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⁹⁾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2회)에 걸쳐 제2차 시험을 치를 수 있음
- 1, 2차 시험 각 4과목으로 1차 시험에서는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과 관세법, 회계학, 무역영어에 대해 평가하며, 2차에서는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과목이 평가 대상임

9) 관세사법 제6조 2항

- 2010년부터 기존 1차 시험 과목이던 행정법을 폐지, 회계학을 신설하는 등 시험 과목이 변경되었음¹⁰⁾

〈표 II-2〉 우리나라 관세사 자격 시험과목

제1차 시험(객관식)	제2차 시험(주관식)
1. 내국소비세법 2.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3.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 4. 무역영어 (※ 1교시: 1,2 과목 / 2교시: 3,4 과목, 시험시간은 각 교시 80분)	1. 관세법(환급특례법 포함, 관세평가 제외)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3. 관세평가 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총 4교시, 시험시간은 각 교시 80분)

주: 2012년 기준
 자료: 관세청

- 제1차와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5지 선택형인 제1차 시험은 과목당 40문제(문제당 2.5점)이며, 주관식 논술형인 제2차 시험은 과목당 6문제(1문제 50점, 나머지 각 10점)임
- 제2차 시험에서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2)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 관세사 시험에 있어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사 기간과 분야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음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특정 분야¹¹⁾(예를 들

10) 1차 시험 과목으로 따로 존재하던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이 2차 무역실무 과목에 통합, 2차 시험 대상이던 내국소비세법은 1차로 변경되었고, 2차 시험 과목에 관세평가가 신설됨. 1차 관세법 개론 내용에 FTA 특례법이 새로 포함됨
 11)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별표1의2

어, 기획재정부 관세국, 관세청 통관지원국, 세관 통관국 및 감시국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제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함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특정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에서 ‘관세법(환급특별법 포함, 관세평가 제외)’과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을 면제함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정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시 동일한 과목을 면제함

3) 특별전형

- 일반 관세사 자격시험과는 별도로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특별전형 시험을 실시하는 제도임
 - 응시대상인원, 관세사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함
- 응시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 중 관세행정에 2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특별전형)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관세행정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연수)임
 - 통상 매년 4월(1차) 및 7월(2차)에 시험을 실시하는 일반전형과는 별도로 8월 경에 실시됨
- 다만, 이 제도는 2000년 「관세사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폐지(법률 제6102호)됐으며 현재는 관세사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로 운영되고 있음
 - 일반전형에 비해 특별전형의 합격률이 더 높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음
 - 법률을 폐지하면서 경력요건 해당자에 대하여 2002년 말까지 3년의 유예 조항이 부칙으로 삽입됨¹²⁾

12) 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없

-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전형의 경력요건에 해당하나 연수 또는 특별전형을 거치지 아니한 자와 일반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경력을 인정하도록 함

- 응시자격이 되는 자는 원서 접수를 한 후 특별교육을 이수하며, 이러한 교육을 이수한 응시자에 한해 객관식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를 가림
 - 특별전형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관세사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특별 교육 신청이 가능함
- 특별교육과 시험이 실시되는 과목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내국소비세법, 무역실무로 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러지며, 일반 전형시험의 1차 시험과목은 모두 면제됨

〈표 II-3〉 특별전형 및 연수의 특별교육 및 시험

특별교육 및 시험과목	시험 시행 시간
1. 관세법(환급특례법 포함, 관세평가 제외) 2. 관세평가	1교시(80분)
3. 관세율표 및 상품학 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2교시(80분)

자료: 관세청 공고 제2013-017호

- 연수대상자는 3주간의 특별교수 이수료, 특별전형 대상자는 객관식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됨
-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사 자격증 교부신청서’¹³⁾를 제출하여 관세사 자격증을 교부받음
 -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

고, 1,000여명의 자격요건 해당자에 대한 행정절차와 업무공백을 고려하여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음

13) 관세사의 직무수행고시 별지 제9호 서, 부록 참조

도 관세사 자격증 교부신청서를 제출함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다.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두고 관세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이나 선발 인원 결정, 시험과목 일부면제 대상자 요건, 그 밖에 관세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함
-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하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시험과목 일부면제 대상자 요건, 그 외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관세청 차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임
 - － 위원은 관세업무 담당 기획재정부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3명, 대학교수나 관세전문가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2명 등으로 구성됨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4. 등록 및 업무의 개시

가. 관세사 등록

-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의 갱신 기간은 5년으로 함¹⁴⁾
 - 관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등록이 가능함
 - 관세사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관세사 등록을 위해서는 관세사회 및 지부에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등록을 위해 약 500만~6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됨¹⁵⁾
 - 기본적으로 일반 관세사 시험 합격 관세사의 경우 관세사회 입회비는 400만원¹⁶⁾이며, 서울지부 입회비는 100만원이므로 이들 모두를 각각 납부하여야 서울 지역에 관세사 등록이 가능함¹⁷⁾

- 다만, 관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관세사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 및 폐업, 사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등록을 취소해야 함

- 관세사 등록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에 고용되어 관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14) 「관세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15) 2013년 1월 기준

16) 관세청 공무원 출신 관세사의 경우 관세사회 입회비는 450만원임

17) 지부별 입회비는 상이함. 예를 들어 인천공항지부의 경우 입회비가 200만원, 부산지부는 250만원임

나. 실무수습제도

-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관세 사회에서 실시하는 실무수습 과정을 이행해야 함
- 일반 전형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과 관련하여서는 「관세사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실무수습은 한국관세사회의 집합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함)과 지도관세사에 의한 교육(이하 ‘현장교육’이라 함)으로 구분됨
 - 기본교육과 현장교육의 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정하며, 기본교육은 월 80시간 이상, 현장교육은 주 20시간 이상임
- 기본교육은 시험 합격생이 집합된 장소에서 관세공무원 또는 실무자 등의 실무 관련 내용의 이론 강의로 이루어지며, 현장교육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등에서 합격생이 실제로 근무하며 수출입신고서 작성,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의 주제별 현장실습이 실시됨
 - 기본교육은 필기시험에 의해, 현장교육은 지도관세사에 의해 평가되며 일정 점수에 미달할 경우 보충교육이 실시됨
- 현장교육 시 지도관세사의 선정은 지도관세사 또는 실무수습자가 직접 추천하는 관세사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지도관세사를 선정할 수 있음
 - 회장은 실무수습자의 수습 희망지역 및 지부별 회원수 등을 감안, 각 지부장에게 지도관세사 선정을 의뢰할 수 있음
- 실무수습을 수료한 자에 대해 관세사회장은 실무수습증서를 교부하고 이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함

다. 업무의 개시

- 관세사는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의 형태로 업무를 할 수 있음
- 관세사가 업무를 시작하려면 관세사회를 거쳐 관세사사무소를 관할하는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 개업신고를 해야 함
 - 관세사사무소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의 경우에는 상근하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통관취급법인 소속 관세사의 경우에는 통관업을 행하는 사무소를 의미함
- 개업을 위해서는 ‘개업신고서’¹⁸⁾를 관세사등록증 사본, 합동사무소(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의 경우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과 첨부하여 관세사회장을 경유,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 등은 신고 후 15일 이내에 관세사 1인당 1천만원 상당 이상의 보험 가입, 관세사회의 공제사업에 가입 등으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함
 - 기타 보증으로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것이 있음

〈표 II-4〉 사무소 유형별 등록 관세사 개업 현황

(단위: 개, 명)

	개인	합동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합계
본사	-	105	97	27	744
사무소 수	515	117	364	40	1,036
관세사 수	521	232	651	44	1,448

주: 2012년 10월 기준, 관세사회에 등록된 관세사 기준이므로 미등록 관세사는 미반영
 자료: 한국관세사회(www.kcba.or.kr)

18) 관세사의 직무수행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부록 참조

- 관세사는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으며, 이들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고, 이들을 채용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관할세관장에 신고해야 함

1) 개인사무소와 합동사무소

- 관세사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하여야 함
 -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대리, 관세 및 수출입 신고 관련 상담 또는 자문, 환급청구의 대리 업무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관세사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동사무소는 1개만 설치하여야 함
-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하기 위해서는 합동사무소 설치계약서, 합동사무소의 회계·경리·운영계획 관련 서류, 업무 분담 및 구성조직체계 관련 서류를 첨부한 ‘합동사무소 등록신청서’¹⁹⁾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 등록해야 함
 - 합동사무소는 소속 관세사의 회계, 경리를 통합하여야 하며, 소속 관세사별로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 경우 그 분담업무에 대해 책임을 짐

2) 관세법인

- 관세사는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²⁰⁾
 -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목적과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사원과 이사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자본금 총액,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19) 부록 참조

20) 「관세사법」 제17조

가) 법인 등록

- 관세법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원 요건 및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함
 -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관세법인 등록·등록갱신 신청서’²¹⁾에 정관 사본, 소속 관세사의 관세사 등록증 사본, 자본금 납입 증명 서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 예정지 기재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여야 하고,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함
 - 이사는 관세법인의 사원이어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였던 사람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음
 - 이사가 아닌 관세사(소속관세사)는 업무의 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함

-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함
 -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해야 함
 - 이에 따라 증여 시 특별이익으로 계산하며,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음

나) 법인 이행 사항

- 관세법인은 직무 수행 중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을 위해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21) 부록 참조, 관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손해배상준비금은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세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을 뺀 금액임
-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함
-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2명 이상이,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함
 - 관세법인의 이사와 소속관세사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음
- 관세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관세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관세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관세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관세사가 되어서는 안 됨
- 관세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의무, 명칭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이사 상근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의 사유가 됨²²⁾
- 관세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총회의 결의,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등록의 취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되며, 등록 취소 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3) 통관취급법인 등

- 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과 이러한 법인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

22) 「관세사법」 제18조의5

하여 설립한 법인, 종합물류기업으로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통관업을 영위할 수 있음

- 통관취급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① 3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과 ② 시설·장비 요건²³⁾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③ 관세법에 따른 운송업·보관업 또는 하역업의 등록 또는 특허를 받은 업체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의 보관업을 영위하는 입주업체여야 함

- 통관취급법인 등은 통관업을 하려는 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함
 -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이 통관업을 행하는 세관의 수와 통관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의 수를 증원하게 하거나 통관업을 행하는 세관을 제한할 수 있음

- 통관취급법인 등은 통관취급법인 등 또는 통관취급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한 통관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음

- 통관취급법인 등은 갱신기간(3년 이상), 업무 시작을 위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개업신고 의무, 그 외 대부분의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함
 - 단,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중 공무원 겸임,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은 통관취급법인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23) 관세사법 시행규칙 별표

(세부 요건은 1. 운송업 중 육상운송: 화물차 20대 이상 또는 트랙터 10대 이상, 해상운송: 1천톤 이상의 선박 2척 이상, 항공운송: 화물전용기 2대 이상, 2. 보관업: 특허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 3. 하역업: 크레인·지게차 또는 컨테이너 취급장비 중 2이상의 장비를 갖출 것)

5. 의무와 책임

가. 의무

- 관세사는 직무에 관한 신고서, 신청서 등의 서류를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해당 서류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문서인 경우 전자서명)을 해야 함
- 관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의뢰한 자의 성명·주소, 의뢰내용, 처리내역 및 보수금액 등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장부의 보관기간은 5년임
 - 관세사, 관세법인 등의 등록취소가 있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시에도 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함
-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관세사나 직무보조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 또한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 다만, 국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는 겸할 수 있으며, 학교나 학원 등 교육 분야에 출강은 가능함
- 관세사(관세법인이나 통관취급법인 등에 소속된 관세사 제외)가 직무 수행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²⁴⁾
 - 한국관세사회에서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2002년부터 관세사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매 1년마다 갱신 및 재가입을 통해 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24) 「관세사법」 제16조

- 관세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세관근무일에 상시 근무해야 하며,²⁵⁾ 10일 근무일 이상 계속하여 상근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관세사회장 또는 소속 지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관세사는 관세사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2회 이상 이수치 아니하는 관세사는 윤리위원회 또는 직무보조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재할 수 있음²⁶⁾
 - 보수교육은 통상적으로 연 1회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교과목은 통관 직무와 관련된 내용 및 최신 통관 관련 이슈 등임

- 관세사는 매월 통관업무 실적을 작성하여 관할 지부장을 경유하여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²⁷⁾

나. 징계 및 벌칙

-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세사회장이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관세사의 징계를 건의한 경우에는 관세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함

- 현재 관세사에 대한 징계는 ① 등록 취소, ② 1년 이하의 업무정지, ③ 6개월 범위 내 업무의 일부 정지, ④ 견책의 4종류임

-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장은 관세사가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관세사의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해야 함
 - 그 외 징계 건의 사유는, 관세사회 회칙 위반, 관세사 직무수행 고시 위반, 1년에 2회

25) 관세사의 직무수행고시 제2-4조

26)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 교육운영규정

27) 관세사회 회칙 제11조제4항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고, 3회째 경고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 직무보조자가 관세사법이나 관세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임

- 관세사가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장이, 관세사 회칙을 위반한 때에는 관세사회장이 관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함

- 관세청장이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장으로부터 징계의 건의를 받거나, 관세사가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당해 관세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관세청장은 징계 건의된 관세사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관세사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세사 회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세관장은 관세사의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고처분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함

- 관세사 징계위원회는 관세청에 두며, 관세청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타 공무원 및 관세사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6명, 관세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관세사 및 관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으로, 총 8명이 위원이 됨

- 징계위원회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는 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함

- 위원장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1) 등록의 취소

- 관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관세사 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 및 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에 관세청장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함

-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 등의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또는 등록요건(사원,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법인 등이 6개월 내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관세청장이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 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2) 업무 또는 통관업의 정지

- 관세법인이 자본금과 관련된 보전과 증자 명령을 위반하거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위반, 3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은 1년 이내의 업무 정지 사유가 됨
 - 그 외에도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하는 명칭위반, 이사의 상근 규정(주사무소에 이사인 관세사 2명, 분사무소에 이사인 관세사 1명 상근) 위반 등도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됨

- 통관취급법인 등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위반, 명의 대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사무소별 1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하는 규정을 위반 시 1년 이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관세청장이 업무 또는 통관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당해 관세법인과 통관취급법인 등 및 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3) 벌칙

- 관세사가 아닌 자가 관세사의 직무를 행하거나, 관세사가 타인에 명의대여를 한 경우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관세사법에 의해 처벌됨
- 관세사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의 직무를 행한 경우, 관세사나 직무보조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세사가 자기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본인의 자격증·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세사 등에게 업무 소개·알선으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관세사가 아닌 자가 관세사 고유 업무를 통해 받은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벌칙에 처해짐
- 그 외 개인 또는 합동사무소가 1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자,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 겸업을 한 자 등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양벌규정의 적용으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관세사의 대리인·사용인 및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관세사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지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관세사도 해당 벌금형에 처해짐
-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고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및 업무 관련 내용 장부 작성·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6. 한국관세사회

- 우리나라에는 관세사의 권익 보호 및 관세업무의 개선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한국관세사회(KCBA,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가 존재함
- 한국관세사회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관세사법」 규정²⁸⁾에 따라 설립됨
 - 「관세사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1976년 9월 법정법인으로 설립된 관세사회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서울, 구로, 안양, 인천공항, 부산 등 전국 19개 지부를 두고 있음
- 관세사회는 국제연합 가입 및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협력·교류하고 있음
 - 한국관세사회는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²⁹⁾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2014년 5월에는 국제관세사회연맹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
 - 또한 1993년에는 아시아-오세아니아 관세사회 연맹(FAOCBA)³⁰⁾에 가입하였음
- 주요 업무는 관세 및 관세사에 관한 법규의 조사·연구 및 건의, 관세사와 그 직무보조자에 대한 연수교육, 관세업무에 관한 강습회 개최, 회보와 도서의 간행, 외국 및 국제 관세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업 등임
- 현재 「관세사법」에 의해 관세청장의 권한 중 관세사의 등록, 실무 수습 교육의 실시, 합

28) 「관세사법」 제21조

29)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ustoms Brokers Associations. 최초에는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뉴질랜드, 미국 등 6개국 관세사회로써 1990년 11월 공식출범하였음. 현재 회원국은 6개국 외 중국, 이태리, 러시아, 필리핀 등 전 세계에 걸쳐 23개국(2013년 1월 기준)임

30) Federation of Asia Oceania Customs Brokers Associations.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스리랑가이며, APEC 지역의 관세사를 대표(일부 국가는 포워딩 포함)하는 국제단체임.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며, 각 회원국은 반드시 협약에 따를 의무가 없는 느슨한 형태의 비영리 협의체임. 2009년 5월 우리나라에서 국제 FAOCBA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동사무소의 등록의 업무가 한국관세사회에 위탁되어 있음

- 관세사는 등록 시 관세사회와 해당 관세사회 지부에 등록 비용을 납부함
-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필수적으로 관세사회에서 실시하는 실무 수습 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함

□ 관세사회는 관세청장의 감독을 받으며,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³¹⁾

□ 관세사회에는 직무보조자 징계위원회를 두어 직무보조자가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며, 정회원과 법인회원의 윤리문제와 징계사항을 조사,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음

31) '한국관세사회 회칙'은 1976년 9월 제정되어 최근 2012년 4월 개정을 거침

Ⅲ. 주요국의 관세사 제도

1. 미국

가. 개관

- 관세사(customs broker)란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충족하고 수출입자를 지원하도록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³²⁾로부터 관세사 자격(customs broker license)을 부여받은 자를 말함
 - 관세사는 자신의 고객을 대신하여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관세국경보호관리국, 이하 'CBP')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관세 등의 납부를 대리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함

- 미국은 1894년 'express agents'와 'customhouse broker' 등의 수출입 관행에 의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재무부(Secretary of the Treasury)에서 국가 공인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통관업무의 주체를 제한함
 - 1984년 통관대리인에 대한 명칭을 'customhouse broker'에서 'customs broker'로 변경하였음

- 미국의 관세사 제도는 19 USC(United States Code Chapter 19; 미국 관세법) 1641 'Customs Brokers' 및 19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Chapter 19; 미국 연방규정) 111 'Customs Brokers'에 규정됨

- 관세사는 수입통관, 요건 충족, 품목분류, 과세가격 결정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32) 2002년 관세사 자격에 관한 권한을 재무부에서 국토안보부로 이전하였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함

- 미국에는 2012년 12월 현재 329개의 개항(ports of entry)에서 약 11,000개의 개인 관세사무소 및 관세법인이 활동하고 있음³³⁾

□ CBP는 2012년부터 관세사 역할 현대화 정책(The role of the broker initiative)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사와 CBP, 수입자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³⁴⁾

- 관세사의 법규 준수도 강화 역할을 확고히 하고, 특히 중소기업 수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9 CFR part 111에 대한 다방면의 개선을 도모함³⁵⁾

□ 관세사 영업허가, 관세사 보수교육 및 관세사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세부목표로 하며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음

-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종류, 수업 이외 다른 유형의 활동 제안, 이러한 교육이 개인 사무소 등의 소기업에 미칠 영향
- 관세사가 수입자와의 관계를 견고히 할 수 있는 방법, 안전을 강화하고 수입절차를 신의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 고객의 신의성실성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CBP의 역할
- CBP의 지역허가 요건 변경에 대한 지지 의사, 중소기업자인 관세사 또는 수입자에게 끼칠 영향

□ 미국 관세청 통관시스템(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ACE)과 함께 법령의 개정 검토를 통해 관세사 제도를 선진화할 예정임³⁶⁾

- 수입자와 관세사의 불투명한 거래
- 관세사에게 고용된 사무원들에 대한 엄격한 보고 의무

33) CBP 홈페이지, 686개의 관세법인 이름이 공시됨

34) CBP, fact sheet(The Role of the Broker)

35) CBP는 2012년 여름 동안 지역 및 현지의 관세사 협회(association)를 만나 항구별 특징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30회의 회담을 열고 6회의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였음

36) 2008년부터 사용되던 핸드북도 바뀔 예정임

- 관세사 협회의 전문성 제고
- 미국 외에서 수행되는 통관업
- 향후 이 검토에 근거하여 법규준수도가 높은 관세사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한 후 입안서 작성과 경제효과 분석을 수행할 예정임³⁷⁾

나. 직무 범위

- 관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통관업(customs business)을 영위할 수 있음
- 다만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직접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관세사가 법적으로 업무대행을 위임한 고용인(an employee) 형태로 통관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은 관세사 자격이 요구되지 않음
 - 고용인의 업무대행을 종료하는 경우 당해 지역 세관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함
 - 선박, 운송수단, 비상업용물품의 통관 및 자유무역지역 운영인 또는 사용인은 관세사 자격이 필요하지 않음
- 통관업이란 수입, 물품 반입, 품목분류, 과세가격 결정, 관세 등 기타 수수료 및 추징세액의 납부 및 환급 등 관세청과 연계된 거래를 포함한 활동을 말함
 - 관세청에 제출하는 수입신고서, 관련 서류의 작성, 송장, 거래내역서 등 문서를 전자 제출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기타 업무를 포함함
 - 19 CFR 111에는 구체적인 직무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수입신고절차를 기술한 19 CFR 141 내지 143 부분에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의 업무와 책임범위가 명시됨
-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수행하는 통관 관련 업무는 크게 관세, 전략물자 수출허가, 무역분쟁 대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37) CBP, Trade Transformation, 2012, 11.

- 품목분류, 관세 조사 및 정기심사, 환급청구, 자유무역지역, 보세창고, FTA 및 기타 특혜관세 적용, 위험물질 등 요건확인 대상물품 반입처리, 원산지, 관세평가
 - 전략물자 대상품목 사전판정, 수출허가 및 관리(Export Controls & Economic Sanctions)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분쟁 대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물류보안, 노동 환경 등 무역정책 기초변화에 대응한 컨설팅 수행(International Trade Policy & Government Relations)
 - 불복청구 대리(Litigation & Dispute Resolution)
 - 반덤핑관세, 상계관세에 대한 조사 대응(Trade Remedies Advocacy)
- 관세사는 제3자를 대리하여 수입신고를 한 경우 동시에 기록보관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 전국허가를 받은 경우 원격지 신고(Remote Location Filing)를 할 수 있음
- 수입자가 대리납부하도록 관세사를 지시인으로 하여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한 경우 및 수입자가 파산보호 신청인 경우 보증인과 함께 연대채무자로서 수입자를 대신하여 관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음
- 통관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업무를 위임받아야 하며,³⁸⁾ 관세사 자격을 가진 임원(officer) 및 직원(employee)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법적 위임절차가 요구됨
- 다만 위임사실을 세관장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으나 재무부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전자수입신고, 납세신고를 하는 수입자, 관세사 및 위임된 대리인은 미국 내 거주자 여야 함

38) 서식(Customs Form) 5291, power of attorney

다. 자격 취득 방법

1) 자격 요건

- 미국 관세사 자격은 4가지 자격 유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CBP의 자격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음
- 관세사 자격은 개인(Individual) 또는 합자회사(Partnership), 단체(Association) 또는 법인(Corporation)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음
- 개인의 경우 첫째, 자격 신청일 시점에 21세 이상으로서 미국 정부기관 공무원이 아니어야 하며, 둘째, 시민권자로서 셋째,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을 갖추고 마지막으로 신청일로부터 3년 이전에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함
 - 도덕성은 여러 기관의 공동 신원조사, 성격 및 명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판단함
- 합자회사의 경우 적어도 하나 이상의 회원이 관세사 자격을 보유하여야 함
-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첫째, 정관에 의하여 관세사로서 통관업을 영위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둘째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임원이 관세사 자격을 보유하여야 함

2) 관세사 시험 제도

- 관세사 시험의 목적은 관세와 관계 법령 및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벌칙, 쿼터 등을 포함한 통관절차, 회계, 기장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임
- 관세사 자격 시험은 CBP 본부(CBP Headquarters)에서 주관하며 연 2회 시행됨
 - CBP 관할 개항에서 매년 4월과 10월 첫째 주 월요일에 시행되며, 시험 공고는 약 두 달 전에 CBP 웹사이트에 공지됨

-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서 연방정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요건으로 하며, 별도의 예비 시험 등은 요구되지 않음
- 온라인으로 신청서(CF 3124E)를 제출하고 시험일 30일 이전까지 응시수수료 200US달러를 납부하여야 함
-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관계법령과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5지 선다형 형태의 8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75%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함³⁹⁾
 - 시험은 4시간 동안 진행됨
- 시험과목은 품목분류, 환급, 수입통관, 무역협정, 관세평가 등의 6개의 과목으로 구성됨
 - 시험 내용은 수입통관, 품목분류, 원산지, 무역 협정, 관세평가, 반덤핑/상계관세, 관세사의 책임, 불복청구, 원산지 표기, 수입 금지물품, 환급, 지식재산권 및 기타 사항으로 함
 - 관세법, 관세율표 등의 참고자료를 지참하여야 하며, 문서로 된 참고자료만 가능함⁴⁰⁾

〈표 Ⅲ-1〉 미국 관세사 시험 과목

(단위: 개, %)

과목	문항 수	비중
품목분류(Classification)	18	23
환급(Drawback)	6	8
수입통관(Entry)	20	25
기타(Miscellaneous)	23	29
무역협정(Trade Agreements)	7	9
관세평가(Valuation)	6	8
	80	100

39) 합격률: 2~40%(평균 20%)

40) 2012년 시행된 시험에서 HTSUS(2011년 개정판), 관세규정, 전자 통관 서류의 용어설명 및 일부 부속서, CBP Form 7501 작성방법, 제조인/선적인 번호 생성 방법, 수입 또는 반출 시 최종 수하인, 수입신고 권한에 관한 관세 훈령(Specified Customs Directive)을 지참하도록 함

- 법인, 단체 또는 합자회사는 개인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퇴사하거나 또는 관세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자격이 취소될 예정인 경우 CBP는 개인 관세사 자격 수험자에게 특별시험(special examination)을 승인할 수 있음
 - 개인 사무소 영업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및 법인 소속으로 구역허가를 받아 다른 구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개인관세사의 자격 또한 승인할 수 있음

3) 자격 취득 절차

- 관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 심사 신청을 통해 CBP 본부의 국제무역국 국장(the Assistant Commissioner,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관세사가 될 수 있음
 - 관세사 자격 주관 부서는 CBP 소속 무역원활화 및 행정실의 관세사 자격심사과(Broker Compliance Branch)임
- 관세사 자격 시험 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관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CBP 항구 세관장(CBP port director)에게 신청하여야 함
 - 관세사 자격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며, 관세사 자격 요건은 21세 이상임
- 자격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자격신청수수료 200US달러를 납부하여야 함
- 관세사 자격 심사는 3단계로 이루어지며, 총 8개월 내지 12개월 정도 소요됨
- 항구 세관장은 CBP 본부로부터 지정된 특별 조사관 또는 여러 담당 기관에 공동 신원 조사를 의뢰함
 -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 신청인의 사업신뢰성, 성격 및 명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대상으로 함
 - 지문인식분석, 성격소개서 검토, 신용 조회 및 체포기록 조회의 방법으로 수행함

- 다음으로 항구 세관장은 신원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추천서 원본과 신원조사 보고서를 CBP 본부에 송부함
- 마지막으로 신청인에 대한 CBP의 최종 평가를 거쳐 국제무역국 국장의 최종 승인 통지가 이루어짐
- CBP에 의해 자격 신청이 거부된 경우 불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
 -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CBP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CBP에서 신청이 거부된 경우 거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토안보부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에 신청할 수 있음
 - 국토안보부에서 신청이 거부된 경우 거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제무역분쟁 법원(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신청할 수 있음

라. 허가 및 업무의 개시

1) 개요

-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관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통관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항구세관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영업허가의 유형은 지역허가(district permit)와 전국허가(national permit)가 있으며 양자의 영업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지역이란 전국허가를 제외하고 관세사가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리적 영역으로 지역 및 항구 목록이 주기적으로 공표됨
- 영업허가의 신청이 거부된 경우 거부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
 - 국제무역국의 거부결정이 있는 경우 국장에게, 국장의 거부결정이 있는 경우 국제무

역분쟁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2) 지역허가

- 원칙적으로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동시에 관세사 자격 통지를 받은 해당 지역에서
의 지역허가 자격이 주어짐
 - 허가신청 처리수수료 100US달러를 납부하지 않아도 지역허가가 발급됨

- 지역허가란 통관업을 수행하는 지역에서 1인 이상의 관세사 자격을 갖춘 자를 정기적
으로 고용하고 관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해당지역 항구세관장의 관리감독을
받음

- 지역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통관업을 영위하고자 하거나 관세사 자격 취득과 동시
에 지역허가를 발급받지 못한 관세사는 신규 또는 추가로 지역허가를 받아야 함⁴¹⁾

- 지역허가는 허가신청을 하고, 수수료 납부 및 관리감독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급될 수
있음
 -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관세사 자격 번호와 자격취득일, 사무소 설립 예정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정부기관과의 사업장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관세사 이름, 지역허가를
받은 모든 구역 명단을 포함함

- 신청처리수수료 100US달러와 연간 허가사용수수료 138US달러를 납부하여야 함

- 사전에 당해 항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세관장과 사업장 설립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하
며,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지역별로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1인 이상의 관세사를 고용하
여야 함

41) 19 CFR 111.19 (b)

- 다만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음
 - 허가 신청 지역보다 넓은 지역에서 1인 이상의 관세사를 정기적으로 고용하고 있고 사업장의 관리감독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CBP에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역허가에 대한 관세사 요건을 면제함

2) 전국허가

- 전국허가란 지역허가가 없더라도 특정 경우에 한하여 통관업을 수행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CBP 국제무역국에 신청하여야 함
- 관세사는 전국허가만으로도 지역허가가 없는 곳에서도 전자환급, 전자신고 등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지역허가를 받은 역내에 소재한 여러 고객의 영업장에 관세사가 직원을 고용하여 수입신고 및 서류제출 이외의 범위에 한하여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경우는 전국허가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⁴²⁾
 - 또한 관세청에서 요구한 경우 수입자의 대리인 권한을 입증한 때에 한하여 전국허가만으로 수입신고를 제외한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지역허가를 받은 관세사는 허가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특정 통관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에 신청인 관세사의 자격 번호 및 취득일, 통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무소의 주소 및 연락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관세사의 자격번호, 사무실 주소 및 연락처, 수수료 납부 영수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신청인의 관세사 자격증이 송부된 항구 세관장에 신청처리수수료 100US달러와 연간 허가사용수수료 138US달러를 납부하여야 함

42) 19 CFR 111.2(b)(2)(i)

마. 의무와 책임

1) 의무

- 관세사는 회계기록 장부를 포함한 재무상태, 회계 거래에 관한 자료를 수입신고일 또는 보세창고 반출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⁴³⁾
 - 보관 기간 동안은 CBP 및 국토보안부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조사로 인한 서류제출 명령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세관장 또는 재무부 공무원이 관세사의 법규 준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국제 무역부의 정기심사 실사관은 보관의무 대상인 이러한 기록보관 의무를 정기적으로 심사함

- 통관업과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기록에 대하여 기밀유지 의무가 있음

- 통관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역허가를 받은 날 또는 최초 영업일 전까지는 직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당해 지역허가를 받은 항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규 직원을 고용한 날로부터 10일, 고용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법인 대표 또는 동업자가 바뀐 경우 즉시 서면으로 변동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직접 또는 고객을 대리하여 간접적으로 납부할 관세 등을 납부기한 내에 신의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수단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함
 - 관세사는 고객이 납부기한을 지나 본인에게 지불한 관세 등을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고객을 위해 조달한 자금을 대해 책임을 지는 내용, 미납 또는 초과수령액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함
 - 고객에게 교부하는 통지서에는 고객이 수입자인 경우 본인의 납부의무 면책을 명시

43) 19 CFR 111.21 ~ 111.27

하는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장 주소와 조직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 관세사의 이름이 변경되거나 구역허가 영역 내의 여러 주에서 법인 단위의 명칭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무역부에 이름을 변경하게 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사의 승인 이후에 사용하여야 함

- 모든 관세사는 3년마다 관세사 자격을 부여한 세관장에게 상황보고서(Customs Broker Triennial Status Report)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100US달러를 납부하여야 함⁴⁴⁾
 - 보고서에는 실제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의 이름 및 주소,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하여야 함
 - 실제로 영업을 영위하는 사실에 대한 CBP의 판단 기준은 자영업자 또는 합동관세사로서 최근에 누군가를 대리하여 관세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그러한 관세 법인에 고용된 경우를 말함
 - 다른 관세사를 대리하거나 그런 업무에 직접 연관되지 않은 경우는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 상황보고는 관세사 자격을 부여한 세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세관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되지 않고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⁴⁵⁾
 - 자격이 정지된 자는 CBP와의 자격정지 동의서(Suspension Agreement) 조건에 따라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법인 등을 설립한 개인 관세사는 개인 자격 및 법인 자격에 대한 2건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상황보고의 제출기한인 자격 개시 3년째가 되는 해의 3월 1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44) 19 CFR 111.30

45) 어떠한 보고서도 직접 CBP 본부에 제출할 수 없음

관세사 자격은 정지 또는 철회될 수 있음

- 제출 기한 다음날로부터 정지(suspension)되며 CBP는 1달 이내로 자격 정지 사실을 통지함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관세사는 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세사 자격은 복귀됨
- 그렇지 않은 경우 관세사 자격은 신규 발급 신청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철회됨

□ 상기의 통관업 수행과 관련한 책임 이외에도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도록 전직 관세당국 공무원과의 결탁을 금지하고 청렴의무, 자격 남용 금지의무 등을 규정함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전직 미국 정부기관 공무원과의 결탁은 금지되고 있음

- 미국 정부기관 출신 관세사는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공직 기간 동안 입수한 정보 또는 사적으로 개입된 사건과 관련하여 고객을 대리할 수 없음
- 또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기의 전직 공무원 출신 관세사를 고용한 고객으로부터 조력을 주고받거나 수수료를 배분하는 것은 금지됨

□ 부당하게 정부기관의 정보를 이용하려 하거나 부당하게 국토안보부 공무원을 위압하는 것은 금지됨

-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한 사건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도, 요청 또는 허위로 증언하거나 권한이 승인되지 않은 정부기록을 입수할 수 없음
- 국토안보부 공무원을 상대로 협박, 부당 고발, 특정 혜택의 약속 및 유인 또는 뇌물 공여는 금지되어 있음

□ 변호사와의 직접 또는 간접거래와 관련한 금전거래 및 고객의 위임 없이 어음을 배서하는 것을 금지함

- 변호인의 법률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세사가 제공한 수출입에 관한 기술, 노력 등에

대한 상여금 또는 어떠한 수수료의 수수 또는 공여를 할 수 없음

- 고객의 위임 없이 미국 정부 국공채, 수표, 고객의 지시로 발행된 어음에 대해 배서 하여서는 안 됨

- 위법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고객에게 법규준수를 유도하도록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해가 상충하는 거래 등을 하여서는 안 됨
 - 고객의 위법, 태만, 관세 탈루와 관련된 업무사항에 대해 성실한 법규준수를 유도하도록 알려줄 의무가 있음
 - 관세사 본인이 수입자인 경우 본인의 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없음
 - 다만 수입자가 그러한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배제됨
 -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불복청구, 서류작성 등과 관련하여 조력을 구하거나 얻어서는 안되며 구직을 위해 부당한 대리행위를 사용해서는 안 됨

- 관세사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하여 통관 업무를 수행한다거나 수익을 배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다만, 통관업무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수입자를 거쳐 운송주선업자에게 전달하거나 정당한 업무대행 계약을 맺어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또한 본인을 대리하도록 고용된 자를 제외하고 관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관세사 자격, 영업허가 또는 이름을 사용하게 허용할 수 없음

- 악명 높은 거래자 또는 관세사 자격이 정지, 권리를 침해하여 취소 또는 철회된 자와의 거래 또는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2) 징계 및 벌칙

- 관세사 자격 또는 영업허가에 대한 징계 유형으로는 취소(cancellation), 정지(suspension), 철회(revocation) 및 정지 또는 철회를 대체하는 벌금형이 있음

- 다만, 일정 기간 동안 관세사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관세사 자격의 정지가 가능함
- 관세사 자격 또는 영업허가의 징계를 주관하는 기관은 CBP 본부 국제무역국 국장으로 항구 세관장의 조사를 통해 처분 여부를 결정함
- 국제무역국 국장은 관세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세사 자격 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관세사가 정지 또는 철회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국토보안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얻어 자격을 취소함
 - 권리를 침해한 경우 관세사 자격 또는 영업허가 취소의 효력은 불복청구 기회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철회의 효력과 동일함
- 관세사 자격 또는 영업허가의 정지 또는 철회 사유는 자격 또는 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고사항을 누락한 경우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음
 - 물품의 수출입, 통관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죄 또는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
 - 관세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세 법령에 관하여 조언, 설득, 교사를 범한 경우
 - 관세청의 서면 승인 없이 관세영업에 관한 중죄를 저지른 자를 고용한 경우
 - 통관업을 영위함에 있어 고객을 협박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고의로 사취한 경우
- 관세사의 경우 정지 또는 철회사유에 한 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30,000US달러 이내의 금액에서 벌금형에 처함
 - 관세사가 아닌 경우 거래 건 또는 위반 사유별로 10,000US달러와 모든 거래 또는 위반에 대한 벌금 30,000US달러 이내의 금액을 부과함
- 또한 고의로 관세사 자격 없이 관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거래 건별로 10,000US달러 이하의 벌금과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가 병과됨
- 관세사 자격 또는 영업허가의 인적 요건이 미비된 경우 당해 관세사 자격 또는 영업허

가는 법령에 따라 철회됨

- 관세법인으로서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적어도 1인 이상의 관세사를 갖추지 못한 경우 및 관세사가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사 자격은 소멸됨⁴⁶⁾
- 관세사 허가를 받은 자가 18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지역 또는 구역(region)⁴⁷⁾ 내에 적어도 1인 이상의 관세사를 갖추지 못한 경우 및 관세사가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사 허가는 소멸됨

- 징계 절차는 예비 심의, 청문, 본 심의를 거쳐 진행되며 징계처분에 대해 국토보안부의 승인을 받아 벌금형으로 대체할 수 있음

바. 미국 관세사·국제운송업자협회

- 미국 관세사·국제운송업자협회(The National Customs Brokers & Forwarders Association of America, Inc.: 이하 'NCBFAA')는 국제무역업계의 법률적 문제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897년 설립됨
 - 100년 이상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위원회, 자문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관세사, 포워딩, 해상운송중개업자, 복합운송주선업자, 항공운송중개업체 등 940여 개의 국제무역 관련 기업으로 구성됨
 - 지역별로 28개의 지부를 두고 있음
- 주요 업무별로 행정, 관세, 교육기관 등을 주관하는 위원회를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행정업무에 대해 감사, 이사진, 예산 및 재정, 조례, 경력개발 위원회를 두고 있음
 - 관세업무에 대해 미국 관세청 통관 시스템 전략 개발그룹, 자동화, 관세사 규정 개정 위원회를 운영함
 - 대형 관세사 및 운송업자 및 자격증별 교육기관 및 마케팅, 기획, IT·행정으로 세분

46) 19 CFR 111.45

47) 19 CFR 111.19(d)에 따른 지역허가 예외에 해당하는 지리적 영역

된 교육기관위원회 등을 두고 있음

- 이 가운데 주요 상임위원회와 정규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은 관세사회 회칙에 규정하고 있음
 - 주요 상임위원회로는 관세위원회, 예산 및 재정위원회, 선임위원회, 운송위원회가 있음
 - 정규 상임위원회는 연례회의위원회와 감사위원회가 있음

- 회칙은 회원 가입과 제명, 회의, 임원과 이사진의 구성 및 임무, 정족수 의결, 상임위원회, 개정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됨
 - 정부기관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구성 및 운영을 주도하고 있음

- 업계에 관한 법령 문제들을 매주 브리핑, 회의 및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알림

- 관세사 자격 준비과정 및 협회 주관의 자격증 시험과 교육과정을 운영함
 - 1년 이상의 통관업 업무 경력이 있는 자는 통관업전문가자격(Certified Customs Specialist) 또는 수출전문가자격(Certified Export Specialist)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연방선거위원회에 등록되어 통관업에 관한 법령을 입안하는 '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운영하여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회원 유형은 일반회원(Regular Member), 기업회원(Affiliate Member), 단체회원(Affiliate Association), 기타회원(Associate Member)으로 하며 정규 회원의 경우 정당 후보 선출에 대한 투표권한이 주어짐
 - 일반회원은 미국 내에서 정규적으로 공인 관세사 또는 공인 국제운송업자 등으로 통관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 기업회원은 정규적으로 공인 관세사 또는 국제운송업자는 아니지만 운송회사, 국제 무역서비스업계의 공급자 또는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함

- 단체회원은 미국 내에 지방, 주 단위의 공인 관세사 또는 공인 국제운송업자 등으로서 업계 교류활동에 대한 특혜가 집중적으로 주어짐
 - 기타회원은 미국 외에서 통관,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입회비는 회원 유형 및 직원 또는 기업의 직원 수에 따라 달리 함
- 정규 회원의 경우 직원이 7인 이하인 경우 562.45US달러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 100명당 41.20US달러로 함
 - 직원이 9인 이하인 경우 731.15US달러부터, 500인 이상인 경우 1983.30US달러로 함
 - 회원기업이 36개 이하인 경우 30.95US달러, 182개 이상인 경우 28.40US달러로 함
 - 연간 입회비는 449.95US달러로 함

2. 호주

가. 개관

- 호주의 관세사(Customs Broker)는 관세법에 따라 호주 관세청(the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의 승인⁴⁸⁾을 받은 자로서, 물품의 화주가 자신을 대신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대리인(호주의 고용인 또는 관세사)으로 위임할 수 있음
- 제3기관의 엄격한 교육과정과 업무능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전문 서비스 제공능력을 배양함
- 관세사에 관한 사항은 호주 관세법(The Customs Act 1901) Part XI 'Agents and customs brokers', 호주 관세규정(Customs Regulation 1926) article 157~162B에 규

48) 호주 관세청은 2003년부터 'the Trade and Compliance Division'에서 'Duty Free Operators'를 포함하여 관세사와 'Depots and Warehouses'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정됨

○ 호주 관세청 고시(Australian Customs Notice) 2010/48(관세사 자격 신청), 2011/48(관세사 자격 공인교육과정), 2012/29(관세사 자격 요건 및 지속전문개발과정 개정), 2012/37(관세사 자격 지속전문개발과정), 2012/43(추가 자격요건)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함

□ 호주 관세청은 특히 2012년에 7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관세사 자격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추가함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수출입 관행을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전문개발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관세사 자격은 최장 3년까지 유효하며 이후 3년마다 자격 소지자에게 관세사 승인 제도(Broker Accreditation Scheme)로서 농수산부의 인증(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certification)부서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2,375건의 관세사 자격이 등록되어 있음⁴⁹⁾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이 취소된 관세사 자격은 2009년 한 건뿐임

○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인기 전문 직종임⁵⁰⁾

나. 직무 범위

□ 수입화주를 대리하여 관세법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는 통관대리인 또는 채용관세사의 권한을 가진 자는 통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통관대리인 또는 채용관세사는 수입화주가 서면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 지정하여 승인하여야 함

49)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Risk management in the Processing of Sea and Air Cargo Imports, Audit Report No.15 2011-2012., p. 97, 98

50) 호주 관세사 협회 홈페이지

- 수입화주의 통관 대리인 또는 채용 관세사로 고용되고자 하는 자가 통관을 대행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입화주로 간주되어야 함
 - 수입화주의 통관대리인 또는 채용관세사가 관세법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는 수입화주가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됨

- 관세사의 직무 범위는 관세법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으나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수출입 통관에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함
 - 특혜관세 신청,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사전확인 신청
 - 요건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신청, 검역허가를 위하여 호주관세청과 관련 기관과 연락
 - 관세 환급 신청
 - 안전한 화물 인도를 위하여 국제운송업자, 내륙운송업자와 운송 주선
 - 보세물품 관리

- 이외에도 수출통관을 위한 선사 또는 항공운송사 운송 예약, 품목분류, 양허세율, 통관 방법에 관한 자문 등도 업무 범위에 포함됨

다. 자격 취득 방법

1) 자격 요건

- 호주의 관세사 자격 요건은 첫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지 않아야 하며 둘째로, 공인 교육과정 또는 지도과정의 교육요건을 충족하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관련 업무경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자격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을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충족하여야 함

- 호주 관세청은 관세사의 업무 수행의 청렴성을 강화하는 4가지 요건을 추가하여 2012

년 7월부터 적용되도록 개정하였고, 자격을 취득한 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강제하는 교육제도를 새로 도입함

-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청렴성을 강화하는 3가지 항목과 지속개발교육 이수요건으로 구성됨
- 추가된 요건 가운데 신원조사 개념인 무결성 조사(integrity check)는 관세사 자격을 신청하는 자에게도 적용되는 요건임

가) 청렴성 요건(결격 사유)

- 호주 관세청장(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Customs; 이하 ‘CEO’)은 관세법 s183CC에 따라 개인의 청렴성(person of integrity), 법인의 적정성(fit and proper) 여부를 판단함
 -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 청렴성, 관세사 자격 요건, 신청인이 관세사인 경우 고용인의 청렴성 여부를 검토함
 - 회사 자격 신청의 경우 법인 관세사 대표와 직원의 청렴성과 법인의 적정성 요건을, 합작 회사 신청의 경우 동업자의 청렴성과 관세사 동업자 고용인의 청렴성을 검토함
- 개인의 청렴성과 법인의 적정성 여부는 법규준수도, 재무상태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함⁵¹⁾
 - 자연인은 자격 신청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관세 법규를 위반하거나 채무불이행의 파산자, 신청서의 허위 기술 또는 고의로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법인은 회사의 대표, 직원 등이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관세 법규를 위반한 경우, 5,000호주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 경우, 회사가 폐업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나) 교육 요건

- CEO는 신청인의 청렴성 등을 검토한 후에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구하여 공인교육과정

51) 호주 관세법 s183CC(4), s183CC(4A)

또는 지도과정을 이수하도록 서면으로 승인함

-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지도과정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업무경력이 상당한 자는 사전교육 승인(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이하 'RPL')을 통해 이를 면제받을 수 있음
- 공인교육과정은 관세사협회를 포함한 정부 교육기관에 의해 제공되며 수출입신고서류 실무 등 11개의 필수과목으로 구성됨⁵²⁾
- RPL은 공인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업무 기술과 지식을 갖추었음을 포트폴리오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함
 - 신청이 승인되면 교육과정 수료증에 상당하는 증서를 받게 됨

다) 경력 요건

- 통관 업무 수행경력이 관세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관세사 자격 시험 합격 여부로 판단함
- 국가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추천서, 경력기술서를 제출하여 업무경력의 전문성과 지식 습득정도를 입증하여야 함
- 관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관세사 자격시험 대신에 별도의 신청을 거쳐 NCBLAC의 실무경력과 세부적인 지식에 관한 인터뷰로 경력 요건을 대체할 수 있음
- 경력기술서는 관세사 업무를 위임한 자의 이름과 주소, 근무 기간, 관리감독자의 이름과 연락처, 업무 내용의 범위,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52) Import-Export Documentation, Border Clearance Functions, Permit Issuing Authorities, GST, Quarantine Procedures, Customs Valuation1, Customs Valuation2, Classification1, Classification2, Integrated Border Clearance

- 관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호주 관세청의 ‘Broker Licensing’ 부서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며 발급까지 약 8주 정도 소요됨
 - 신청인은 공인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11개 과목의 이수 사실을 증명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대학교의 이수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표 Ⅲ-2〉 호주 관세사 자격 취득 요건

1. 청렴성 및 적정성 (Person of Integrity, fit and proper)	2. 교육 요건 (Course of Study)	3. 경력요건 (Acquired Experience)
법규준수도 및 재무건전성 평가	공인교육과정 이수	국가 자격시험 합격 및 경력기술서 제출
	사전교육승인	경력기술서 제출 및 NCBLAC의 경력 인터뷰

2) 관세사 시험 제도

- 호주의 관세사 자격시험(National Examination)은 관세사 자격 취득 요건 가운데 하나인 경력요건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본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관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다만 시험문제가 매우 실무적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 경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 호주 관세사·국제운송업자협회(Customs Brokers and Forwarders Council of Australia; 이하 ‘CBFCA’)에서 주관하며 매년 5월과 10월 2회 시행됨
- 관세사 자격 요건 중의 하나인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함
 - 고시에 합격한 자는 CEO에 의해 호주관세법 S183CC(2)(b)의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됨
 -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CBFCA 관세사 교육과정 또는 TAFE⁵³⁾ 관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관세사 업무영역의 상당한 실무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⁵⁴⁾

- 관세사 자격 시험의 합격 사실만으로 경력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경력 기간 및 업무 수행 내역과 추천서를 통하여 판단함
- 시험은 3.5시간 진행되며 70%를 합격 기준으로 함
 - 2012년 10월 시험 기준으로 지원자 총 79명 가운데 14명이 합격하여 합격률 18%를 나타냄
- 매우 실무적인 내용의 주관식 문제로, 공인교육과정의 필수 11과목의 범위 내에서 출제됨
 - 수출입 서류를 취급하는 방법, 특정 사례가 주어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기술하는 내용의 문제 등으로 구성됨
 - 시험과목과 문항 수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음

53)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호주의 주립 기술전문대

54) CBCFA 홈페이지

〈표 Ⅲ-3〉 호주 관세사 자격 공인교육과정 필수과목

연번	호주 관세사 자격 공인교육과정 필수과목
1	수출입 서류 작성(Complete and Check Import-Export Documentation)
2	통관 절차(Carry out Border Clearance Functions)
3	요건확인(Apply Specialist Permit Requirements as Part of Customs Broking Activities)
4	특혜관세 적용(Apply GST Regulations as Part of Customs Broking Activities)
5	검역허가(Carry Out Quarantine Procedures)
6	수입통관 실무(Carry Out Customs Clearance Practices)
7	관세평가(Carry Out Customs Valuation)
8	품목분류(Classify Commodities for the Import and Export of Goods Through Customs)
9	품목분류 심화(Classify Complex Commodities for the Import and Export of Goods Through Customs)
10	관세평가 심화(Carry out Complex Customs Valuation)
11	통관실무 자문(Analyse, Advise on and Carry out Integrated Border Clearance Transactions)

3) 자격 취득 절차

- 호주 관세청의 서류심사와 관세사 자격 자문 위원회⁵⁵⁾(the National Customs Broker Licensing Advisory Committee; 이하 'NCBLAC')의 조사를 거쳐 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함
- 관세사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관세청의 관세사 자격 부서(the Broker Licensing section of Customs)에 관세사 자격 신청을 할 수 있음
- 자격 신청서는 서면으로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명시하고 법인 관세사 자격의 경우 채용관세사를 지정해야 함
 - CEO의 자격 부여 요건인 청렴성 등이 요구되는 자의 이름, 주소 및 특이사항을 명

55) 관세청 소속 위원 및 관세사 산업에 의해 지정된 산업의 대표위원과 의장직으로 전 사법공무원으로 구성됨

시하여야 함

- 신청 지역에서의 채용관세사를 추천하는 경우 당사자의 서면 동의와 함께 자격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관세사 자격의 부여 또는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는 신청인이 자연인으로서 본인의 권한으로 통관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120호주달러를, 수행할 경우 1,200호주달러를 납부하여야 함
 - 수수료에는 관세사 자격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음

- CEO는 관세사 자격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CEO에 의해 결정된 담보액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담보의 종류 보증증권(bonds), 보증서(guarantee) 또는 현금 또는 기타 다른 지급 수단으로 제공 가능함
 - 담보금액은 신청인 또는 관세사에 대해 규정된 분류에 따라 결정됨⁵⁶⁾
 - 관세법 및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요건확인 및 허가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관세 채권 확보 및 관세사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관세사 자격을 박탈하거나 유보될 경우를 대비하고자 담보를 요구함

- 담보 제공을 요구받은 신청인 또는 관세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세사 자격이 부여되지 않거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납부한 담보액이 통지된 금액에 부족한 경우 관세사 자격의 소지할 수 없음

- CEO는 신청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관세사의 자격 또는 자격증에 명시된 지역에서의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 법인 관세사 자격은 채용관세사 자격이 있는 그 지역의 관세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관세사 법인이 통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명시할 수 없음

56) 이에 관한 규정은 신청인 또는 관세사의 분류에 따른 담보액을 규정하고 신청인 또는 관세사의 자연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음

- 서류심사는 정보의 진정성 확인, 신청자에 관한 대중의 정보 제출 등을 포함함

- NCBLAC는 자격 부여 여부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조사하며 이는 약 8주 정도 소요됨
 - NCBLAC는 관세법 s183D에 따른 관세사 자격의 적격 여부에 대해 CEO에 권고사항을 전달함
 - 관세사 자격 신청인에 대해 질의를 거쳐야 할 경우 추가적으로 8주가 소요될 수 있음

- 또한 소속관세사 자격 신청에 대하여 해당 지원자가 관세사 자격에 적합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음

- CEO는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자격증에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과 채용 관세사의 이름을 명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함
 - 해당 지역에서 채용관세사로서 자격이 없는 자의 관세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자 함

- 관세사 자격은 최종 만료일로부터 3년 간격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개인에게 부여된 관세사 자격은 사망할 때까지 유효함
 - 관세사 자격의 종료일 2개월 전부터 CEO, 해당 주의 Regional Director에게 서면으로 자격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 채용관세사의 자격증 효력은 기명날인된 날로부터 채용관세사가 사망하거나 CEO에 의해 명단에서 삭제된 경우 만료됨
 - CEO는 채용관세사의 이름을 사망, 자격 소지 또는 관세사 업무를 종료하거나 명단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및 기명날인에 오류가 있는 경우 관세사의 관세사 자격증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음

4) 관세사 자격 자문 위원회

- 관세사 자격 자문 위원회(the National Customs Broker Licensing Advisory Committee)는 위원장, 관세사 대표 및 연방정부의 대표로 구성됨⁵⁷⁾
- 주요 업무는 관세사 자격 신청인의 신원조사, 관세사 자격 신청인의 공인교육과정 이수 승인 및 관세사의 위법 등 조사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CEO의 위임을 받아 조사와 보고를 수행함⁵⁸⁾
 - 이외에도 기타 CEO가 요청하는 관세사의 의무와 책임 수행 여부에 관한 기준 제시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함

라. 업무의 개시

1) 영업 유형

- 관세사의 유형은 개인사무소(sole trader-unrestricted), 소속관세사(nominee) 및 회사(company) 또는 합작회사(partnership)형태의 관세법인(corporate)으로 구분될 수 있음⁵⁹⁾
- 개인 자격은 자신의 위험과 책임으로 행동하는 개인사무소와 자신의 위험과 책임으로 행동하지 않는 소속관세사로 구분될 수 있음
- 개인사무소는 관세사로서 통관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ICS를 사용하도록 호주무역업번호를 취득한 사업체로 관세사를 고용할 수 있음

57) 이전의 통관대리인 자문 위원회(The National Customs Agents Licensing Advisory Committee)를 포함함

58) 호주 관세법 s183D

59) 호주 관세청

- 소속관세사는 개인 관세사로서 개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에 고용될 수 있음
 - 수입화주로부터 서면으로 지정된 통관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고용주가 관세법인인 경우 법인에 고용된 자로서 관세사의 통관 지역에서 활동하는 관세사여야 함

- 관세법인은 호주 통관시스템(the Integrated Cargo System; 이하 'ICS')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호주무역업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를 취득하여야 함
 - 신탁회사(trust)는 원칙적으로 관세사가 될 수 없고, 피신탁자는 신탁증서의 지정인(the nominated entity in the Deed of Trust)이 자연인, 법인 또는 합작회사인 경우 가능함

〈표 Ⅲ-4〉 호주 관세사 자격 유형

구분	관세사 자격 유형
개인	소속관세사(a nominee), 본인의 권한으로 관세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개인 관세사
	개인 사무소(a sole trader), 본인의 권한으로 관세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관세사
법인	수입화주로부터 대리인으로 승인받은 자
	관세법인(Corporate)

2) 업무의 개시

- 별도로 관세사 업무의 개시에 대한 등록절차를 두지 않고 관세사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자격 신청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그에 따라 통관업을 개시할 수 있음

- 특정 지역에서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 화주의 대리인 또는 수입화주의 관세사로부터 채용되고자 하는 자는 수입화주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

- 자격 신청서에 자격 유형과 통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역을 명시하여 제출함

- 통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자격, 개인사무소의 경우 고객 등록, 관세사 자격, 전자 인증서 모두 동일한 ABN을 사용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ICS)에 등록되어야 하며 전자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함
- 채용 관세사는 고유의 전자 인증서가 요구되지는 않으나, ICS에는 등록되어야 함
- 통관업 개시 여부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함
 - 통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1,200호주달러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0배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호주 관세청장이 관보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수입 화주가 배타적으로 고용한 자 또는 그 지역의 관세사만이 통관을 대리할 수 있음
- 관보로 고시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수입화주가 서면으로 통관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음
 - 대리인이 통관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대리인을, 대리인이 관세사인 경우 해당 지역의 관세사로부터 고용된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마. 의무와 책임

1) 의무

-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세사 자격 취득요건 가운데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가) 자격 요건 유지

- 관세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다음과 같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재무적으로 위험에 처한다면 관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음

- 개인이 파산한 경우
 - 법인의 재산이 저당잡히거나 폐업에 이른 경우 등
 - 채용 관세사가 사망 또는 퇴사한 경우 등
- CEO는 관세사 자격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세사 자격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자격 요건을 회복하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⁶⁰⁾
-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관세사는 해당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CEO에 서면으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2012년 관세사 자격을 소지한 자의 의무로서 무결성 조사 동의, 오류에 대한 자진신고 및 정보 보안 관리 및 지속개발교육 이수 의무의 4가지 의무를 추가함⁶¹⁾
- 관세청이 요구하는 경우 관세사 본인을 포함한 통관 업무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 대한 무결성 조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CEO에 제출해야 함
 - 관세청에 고객 또는 고객을 대리하여 제출한 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는 가능한 빨리 서면으로 CEO에 당해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관세청 시스템 또는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이 승인되지 않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나) 무결성 조사 동의

- 무결성 조사는 위험 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여러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함
- 관세청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검사, 주연방 및 호주 연방경찰청의 조사, 범죄수사국(CRIMTRAC),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호주 파산관리청(Insolvency and Trustee Service Australia)이 관여할 수 있음

60) 호주 관세법 s183CG

61) 호주 관세청 고시 2012/43

- 이를 통해 관세사 자격 요건 가운데 청렴성 요건을 확인하는 명확한 절차를 갖게 되며 개인의 청렴성 여부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무결성 요건은 관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자 및 보유한 자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통관업무에 간접적으로 연계된 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음
 - 명문화된 조사 대상자는 회사 대표, 관세사 및 소속관세사 등이지만 실질적으로 통관시스템 접속권한을 가진 자, 화물의 신고처리 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

다) 자진신고 의무

- 관세사가 관세 산정 및 물품통관 과정에서 고객의 요구로 허위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자진신고 요건을 추가함
 - 관세사 자격을 소지한 자는 본인의 고객으로 하여금 관세사의 이러한 법규준수 의무를 인지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제기됐음
- 자진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본인이 관세청에 제공한 정보가 관세 세수입 또는 물품의 안전성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지 여부를 스스로 고려하여야 함
 - 예를 들면 본인이 관세청에 제출한 정보로 인해 수입금지, 수입제한 물품이 반입된 경우를 들 수 있음
- 가능한 한 빠른 시간(as soon as practicable)에 대한 판단은 관련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상황으로 보아 결정할 수 있음
 - CEO에 대한 통지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

라) 정보 보안 관리의무

- 관세사에게 부여되는 통관시스템 접근 권한 및 관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들에 대해 고용인 등 관계당사자들의 불법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추가함

- 정보관리의 보안을 강화하고, 시스템의 ID와 비밀번호, 정보의 기밀유지의무와 관세청 정보를 무작위로 배포하거나 시스템의 조작 등이 금지됨

마) 전문성 지속개발교육 이수

- 2012년 7월부터 관세사 전문성 지속개발계획(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이하 'CPD')을 추진하여 세수 확보와 관세법규 준수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관세사 자격 요건으로 추가함⁶²⁾
 - CPD 이수 요건은 2013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영업활동 여부를 불문하고 2013년 7월부터 매년 관세사 전문성에 관한 교육과정에 참여해야 함⁶³⁾
- 향후 연방정부(Commonwealth)가 관세사의 지식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도입하게 됨
 - 현재 연방정부가 통관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고 관세청(CEO)이 관세사 업무의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신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없다는 문제에 직면하였음
- 이 계획의 목적은 관세사가 보다 나은 전문지식, 역량에 기반을 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
 - 관세법규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한 호주 관세청의 다른 이니셔티브를 지원 및 보완하기 위함
 - 전문 직종으로서 개념을 강화하도록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
 -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현대화하도록 기회와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함

62) 호주 관세법 s183CG, 호주 관세청 고시 2012/29, 2012/37, 2012/43, 2012/73

63) 관세사 자격 신청자와 관세사 자격이 없는 관세사 사무원은 CPD 이수 의무는 없음

- 관세사 자격을 지닌 자는 매년 일정한 CPD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적절한 CPD 공인과정
정을 이수하여야 함
 - 필수 과정별로 각 10점 이상과 선택적으로 3 과정 중의 하나에서 10점을 이수하여
매년 총 30점(연간 10시간)을 이수하여야 함⁶⁴⁾

- CPD는 관세사 의무, 위험과 윤리현장을 포함하여 다음 중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구성
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임
 - INCOTERMS, FTA,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등의 관련 법령에 관한 관세 전문지
식 및 인력관리, 영업활동에 관한 관세사 경영활동
 - 교육활동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비디오 회의 DVD, webinar 등의 대면형식으
로서 형식보다는 전문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함

〈표 Ⅲ-5〉 CPD 이수 취득점수 예시

Stream	예시 1	예시 2	예시 3	예시 4
Broker Obligations, Risks and Ethics	10	20	10	12
Professional Brokerage Skills	20	10	10	12
Brokerage Management	0	0	10	6

- CPD 이수 내역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활동의 세부사항에 대한 NCBLAC의 인증 여부와
점수에 대한 검토를 거쳐 CEO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이 인증절차는 NCBLAC와 CEO가 적법성 검토를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활
동의 관세사 책임과의 관련성과 교육자의 적절한 교육 제공 자격 요건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짐

- 정보의 전문성과 개별 활동의 결과물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CPD 활동의 조직 인력 및
교육자 인력의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음

64) 2012~2013년에 대해서는 CPD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2013~2014년에 대해서는 취득 점수의 50%
인 과정별로 5점을, 2014년 7월부터는 정상적인 취득 점수가 요구됨

- 다만 조직 인력으로는 산업협회, 인증교육기관, 관세사 고용인, 품목분류 컨설턴트, 법무법인 컨설턴트, 소프트웨어 공급자, 무역 규제기관 등
- 교육자는 경력 관세사, 인증교육기관의 강사, 경력 컨설턴트, 경영관리 프로그램 전문가, 무역규제 관련 공무원

□ 이 요건을 위반한 경우 관세사 자격의 정지, 취소되거나 또는 자격갱신이 거부될 수 있음

2) 징계와 벌칙

- 징계의 종류는 자격취소, 자격정지, 일정 기간 동안의 자격 정지, 견책 등으로 구분됨
- 징계권자는 CEO로서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NCBLAC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함
- CEO는 관세사가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조사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관세사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함⁶⁵⁾
 - 개인의 파산, 법인의 청산에 처한 경우
 -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세사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관세사 자격의 권한 또는 특혜를 남용한 경우
 - 수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8일 이상 지연된 경우
 - 관세사 자격 신청내용에 허위 또는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한 경우
 - 관세사 자격 부여 또는 갱신 요건, 통관 대리인의 관세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추가 기한 내에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NCBLAC는 CEO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근거로 하여 조사하고 CEO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65) 호주 관세법 s183CQ

- CEO는 보고서 검토 후 자격의 취소(cancel), 갱신 불허, 견책 또는 특정 기간 동안 자격정지(suspend)를 명령할 수 있음⁶⁶⁾
 - 관세사 자격을 위원회의 조사 기간 동안이라 하더라도 관세채권 확보 또는 기타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자격을 정지(interim suspension)할 수 있음
- 자격 정지의 효력은 관세사로서 행위하거나 관세사의 고용인으로서 행위할 수 없음을 의미함
 - 관세사 본인, 채용 관세사인 본인 및 본인의 고용인, 소속관세사 등은 관세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바. 호주 관세사·국제운송업자 협회

- 호주의 관세사·국제운송업자 협회⁶⁷⁾(The Customs Brokers and Forwarders Council of Australia Inc.; CBFCA)는 1991년 통관대리인연맹(the Customs Agents Federation of Australia)과 통관대리인협회(the Customs Agents Institute of Australia)를 통합하여 설립되었음
 - 1904년 주 단위의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에서 1954년 국가기관으로 승격됨
- 관세사, 운송업자를 포함한 국제무역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설립 목적으로 함
- 250명 이상의 관세사, 국제운송주선업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설턴트, 채용회사, 물류창고 등의 업체 및 학생, 교육자 등의 개인도 가입되어 있음
- 관세사회 회칙(By-Laws)과 관세사회 설립 규정(Rules for Incorporation)이 있음

66) 호주 관세법 s183CS

67) 1991년에 호주의 통관업자 연맹과 통관업 협회가 합병하여 호주관세사협회(CBCA: Customs Brokers Council of Australia Inc.)로 알려진 단일기관으로 합병되면서 용어 “broker”가 호주관세청에 의해 모든 업무처리에서 사용될 것으로 합의됨, 호주관세청 고시 No.91/152

- 관세사회 회칙은 회원가입 조건, 유형, 관세사 배상책임 보험 조건, 전문직 윤리강령으로 구성됨
- 관세사회 설립 규정은 회원의 의무와 책임, 가입비용, 회원 등록 및 사임, 회원 제명 사유 및 제명 절차, 회의, 이사진 구성 등의 내용임

- 기업회원, 개인회원, 학생 등의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음

- 입회비는 회원 유형에 따라 개인회원의 경우 연간 회원비만 납부하며 기업회원의 경우 전에 CBFCA의 회원이었던 경우 재가입비용인 350호주달러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연간 회원비는 기업의 규모, 직원 수에 따라 달리 산정되며 비공개 사항임

-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함께 CBFCA는 관세당국과 공조관계를 강화해야 함을 인지하고 업계를 대변하는 사안을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 호주의 관세당국은 점차 법규준수도 관리를 공인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업 영역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CBFCA는 통관시스템, 관계 법령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 및 권고사항에 대해 호주 관세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이러한 CBFCA의 공조 분야는 통관시스템, 세율 변경, 물품 검사 등 모든 통관 분야를 아우르고 있음
 - 의견전달 사안과 호주 관세청의 반영 및 개선여부는 모든 회원이 공유하도록 공지하고 있음

- 이외에도 CBFCA는 수출허가, 검역, 수출허가, 해상운송, 항공운송 등의 분야에서 해당 업무의 주관기관과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발굴하고 있으며 이를 회원들과 공유하고 있음

-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교류를 위하여 각종 행사와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최하고 있음

- CBFCA는 관세사 자격 시험을 주관하며 관세사 및 국제운송 학위 이수 교육을 포함하여 국제무역 및 운송에 관한 다방면의 교육을 운영함
 - 검역물품, 고위험물품, 화물운송대리인의 관계 법령에 따른 법규준수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

3. 캐나다

가. 개관

- 캐나다의 관세사(Customs Broker)는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 Customs Border Service Agency)이 주관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CBSA의 면허를 받아 수출입통관 대행 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관세사는 캐나다관세사협회(Canadian Society of Customs Brokers)의 회원임
- CBSA가 관리하는 관세 규정 가운데 관세사 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D1 - General 내 D1-8-1(Licensing of Customs Brokers), 관세사 시험은 D1-8-3(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ustoms Brokers Professional Examination)에 규정함
 - 타인을 대신하여 CBSA와 업무를 행하는 대리인(agent)의 정의와 역할 등에 대해서는 D1-6-1(Authority to Act as Agent)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음
 - D Memoranda⁶⁸⁾는 23개(D0 내지 D22)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음
- 또한 관세사 면허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으로 「관세사 면허 규정(Customs Brokers Licensing Regulations)」이 존재함
 - 본 규정은 1986년 11월 6일 제정되어 2006년 6월 23일 최신 개정을 거쳤음

68) www.cbsa-asfc.gc.ca/publications/dm-md

- CBSA의 홈페이지에서 면허를 받은 관세사의 상호 및 이메일과 웹페이지 등의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음⁶⁹⁾

나. 직무 범위

- 캐나다의 관세사 관련 규정에는 관세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D Memoranda 내 관세사 면허 관련 규정인 D1-8-1과 시험 규정인 D1-8-3 및 「관세사 면허 규정」 내에 관세사의 직무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다만, CBSA가 운영하는 대리인의 권한 규정인 Memorandum D1-6-1(Authority To Act As Agent)에서 CBSA와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의 정의와 권한의 증명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함
- 캐나다의 관세사 수수료에 대해, 관세사와 위탁자 간 사적 거래이므로 CBSA에서는 이에 대해 규정하거나 관여하지 아니함을 명시함⁷⁰⁾

1) 대리인으로서의 권한⁷¹⁾

- 타인을 대신해서 CBSA와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대리인(agent)이라고 하며, 만일 이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CBSA는 업무 처리를 거부할 수 있음
- 만일 대리인이 위탁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탁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CBSA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관련 세금 등을 납부할 모든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음

69) <http://www.cbsa-asfc.gc.ca/services/cb-cd/cb-cd-eng.html>

70) Memorandum D1-8-1, Brokerage Fees 조항

71) Memorandum D1-6-1

- 납부하여야 할 비용에는 관세와 세금 및 벌금(penalties)과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금액이 포함됨
- 업무를 처리하는 대리인은 자신이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서면상으로 권한의 위임을 증명할 수 있음
 - CBSA는 서면의 형식은 불문하며 대리인이 위탁자(주로 수입자 또는 물품의 소유주)로부터 업무 처리 권한을 위임받았음이 나타나있으면 됨
 - 서면에는 위탁자와 대리인의 이름과 사업자번호(business number) 및 주소, 권한을 가진 처리 업무의 종류, 권한의 유효 기간(특정 기간 또는 계속적), 부대리인(sub-agent)의 지정 여부, 위탁자와 대리인의 이름과 상호 및 서명, 권한의 유효한 시작일자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수입자의 고용인(employee)과 대리인의 고용인이 그들의 고용주(수입자 또는 대리인)를 대신해 업무 처리를 할 경우, CBSA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고용인이 자신의 권한을 충분히 입증할 때까지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

2) 직무의 종류

- 관세사는 물품 수출입 절차에 관여하는 전문가로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관 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함
 - 수출입 업체를 위하여 필요 통관 서류를 준비하고, 품목분류 업무 및 관세와 세금 납부, 수입 허가 및 수출 면허를 발행하는 등 업체가 복잡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통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력함
- 실무적으로 관세사는 수출입 업체를 대행하여 통관을 처리하며 통관 업무와 관련된 각종 컨설팅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캐나다의 관세사는 통관 대행 및 컨설팅 이외에 운송 주선(freight forwarding) 및 물품 보관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수출입 신고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직무로는 HS 품목분류, 관세평가(valuation), 수출입 허가 및 라이선스 취득 대행, 관세 및 세금의 대리 납부 등이 있음
 - 수입 통관 시 담보의 일종으로서 필요로 하는 보증증권(bonds)을 제공하기도 함

- 그 외에 관세 환급(Duty Drawbacks) 신청을 대행하며, 사후 준수성 심사(compliance audits)에 대비한 검토를 이행하여 금전적 추징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며, 불복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관세에 대한 규정 및 국제 무역법에 대한 경험과 지식으로 통관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한 예로 NAFTA 컨설팅 등 FTA 관련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함
 - 수출입 업체의 통관 관련 업무에 대한 검토, 분석을 통해 전문적인 컨설팅과 정보 제공, 원산지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

다. 자격 취득 방법

1) 자격 요건

- 캐나다의 관세사 자격은 ① 캐나다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② 도덕성(good character)을 갖춘 자로서, ③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④ 책임지고 업무를 행할 정도의 재원(financial resources)을 갖추고 ⑤ 수출입과 관련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에게 면허를 승인함

- 관세사 전문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지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나, 본 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 관세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관세사라는 명칭은 D1-8-1에 따른 관세사 '면허(Licensing)'를 취득한 자에게만 사용됨

- 또한 법인의 경우 영업 유형에 따른 설립요건, 즉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전문 사무

원을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함

2) 관세사 시험 제도

- 캐나다의 관세사 시험은 ‘관세사 전문시험(Customs Brokers Professional Examination)⁷²⁾’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하고 있음
 - 기존에는 관세사 시험이 ‘관세사 전문시험(Customs Brokers Professional Examination)’과 ‘관세사 자격시험(Customs Brokers Qualifying Examination)’ 2가지 존재하던 것이 현재는 자격시험이 폐지되어 전문시험만 존재함

〈표 III-6〉 최근 관세사 전문시험 응시자수 및 점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원자 수	129	113	122	115	116
점수대	26~84	42~82	28~84	30~82	31~83
평균획득점수	60	64	59	60	60

자료: CBSA(Customs Brokers Professional Examination - Examination Results)

- 관세사 면허 규정은 관세사로 하여금 수출입과 관련된 법률과 절차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도록 하고, CBSA에서 실시하는 전문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지식과 업무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음
- 관세사 전문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되며, 시험의 일시와 장소는 시험 실시 60일 이전에 관세청장이 공고하여, CBSA 상업 사무소 또는 CBSA의 웹사이트에 게재됨
- 관세사 전문시험은 3시간 동안 1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문제는 다지선다형 객관식임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시험 실시 최소한 30일 전 가장 가

72) Memorandum D1-8-3, Customs Brokers Licensing Regulations 제15조

까운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응시료는 200캐나다달러임

- 관세사 전문시험 응시료는 200캐나다달러이며 이는 환불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함

- 시험의 응시하려는 자는 신청 서식인 관세사 시험 신청서(Application for Customs Brokers Examination)⁷³⁾를 작성 후 CBSA 상업 사무소에 제출해야 함
 - 최소한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 신청은 받지 않음

〈표 Ⅲ-7〉 캐나다 관세사 전문시험 과목

교시	시험 과목
1	관세법, 관세율표, 소비법(Excise Act), 소비세법(Excise Tax Act), 특별 수입 절차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
2	CBSA 규정, 정책 및 절차
3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기타 정부 부처를 대신하여 CBSA가 관리하는 규정
4	일반적인 상관습(business practice)

자료: Memorandum D1-8-3 Appendix B

- 전문시험에서는 관세법과 관세율표 및 소비세법 및 수출입과 관련된 CBSA의 규정 등과 일반적 상관습 등 4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됨
- 본 시험에서 응시자는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합격 처리됨
- 시험의 결과는 시험일로부터 4주 이내에 우편으로 응시자에게 송부하고 있음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관 대리 업계에서 경험을 쌓아야 함
 - 면허를 받아 개인 관세사로서 업무를 행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관세사에 의해 출자자, 관리자, 전문 사무원(qualified officer), 직원 등으로 고용되어 일할 수 있음

73) form L55, 부록 참조

- 이 관세사 전문시험은 개인 관세사로 면허를 신청할 자 또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전문 사무원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임
 - 전문 사무원이란 관세사의 자격 요건(시민권 및 영주권, 도덕성, 18세 이상, 충분한 재원,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일정 경력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관세사 면허를 받은 자가 전문 사무원임을 확인해 주는 사람임

3) 면허 취득 절차

- 관세사 자격증은 관세법(Customs Act) 제9조에 따라 발급되며, 자격증의 취득 및 유지 요건은 관세사 면허 규정(Customs Brokers Licensing Regulations)에 설명하고 있음

가) 면허의 신청

- 관세사 면허의 신청을 위해서는 ‘관세사 면허 신청서’(Application for a Customs Brokers License)⁷⁴⁾에 개인 소유주 또는 법인의 모든 출자자 및 관리자와 관련된 정보가 전문 사무원에 의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함
 - 전문 사무원 및 모든 출자자와 관리자는 관세사 설문지(Customs Brokers Questionnaire)⁷⁵⁾를 작성해야 함
- 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위 ‘관세사 면허 신청서’ 및 ‘관세사 설문지’와 함께 50,000캐나다 달러 상당 금액의 담보금 제공이 필요함
 - 신청 시 제출하는 50,000캐나다달러의 담보는 현금, 보증 수표, 국가 발행 양도가능 채권, 또는 D120 채권 중 하나로 제공되어야 함
-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조합인 경우, 법인이 사업을 하려는 지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법인 설립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의 사본이 필요하며, 법인의 직원

74) form L53, 부록 참조

75) form L60, 부록 참조

중 1명을 전문 사무원으로 임명한다는 이사회 결의안을 제출해야 함

- 신청인이 법인 구성 조합인 경우에는 그 출자자 중 1명을 전문 사무원으로 임명한다는 이사회 결의안을 제출해야 함

- 또한, 신청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충분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 상태 관련 정보를 면허 진행 절차 중에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음
 - 자원 증명 정보는 관세사 면허 신청 시 필수 제출 정보는 아님

- 전문 사무원이 서명한 신청서는 신청자가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지역의 CBSA 상업 사무소(commercial office)에 제출됨

나) 신청의 처리 및 면허

- 모든 필요 정보와 서류가 CBSA 사무소에 접수 완료되면 승인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됨
- 신청을 받은 지역 관할 세관장은 2주(10 영업일) 동안 본 신청 건을 공고하여 일반 대중으로부터 서면 의견과 정보를 수렴하는데, 이를 위해 ‘관세사 면허 신청 공고(Notice of Application for Customs Brokers License)’를 전산상으로 공지하거나 배포함
-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되면 CBSA 사무소는 공고에 따른 대중의 서면 응답을 첨부하여 모든 신청서류를 담당 지역 책임자(regional director) 사무소에 보내 검토를 요청함
- 범죄 기록 등의 조사 후 지역 책임자는 모든 필요 서류 및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신청서에 서명하여 모든 신청서류를 면허자문위원회(LAC)의 사무국(Secretary)에 전달함
 - 전문 사무원, 관리자, 출자자의 도덕성 요건은 지역 책임자의 사무소에서 부서별 조사를 통해 수행되며, 전과 기록과 개인, 업무의 경력 등을 조회함

- 면허자문위원회의 사무국은 본 신청이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에 대한 요약서를 작성하여 면허자문위원회에 전달함
 - 사무국은 관세사 면허 공고에 따른 대중의 서면 의견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음

- 면허자문위원회는 면허 신청 건이 모든 요구 사항에 합치할 경우 허가국(Admissibility Branch)의 부국장(Vice-president)에게 이를 승인할 것을 권유함

- 부국장의 승인이 있으면 신청 시 제출했던 제반 서류는 다시 면허자문위원회의 사무국에 전달되며, 사업을 영위할 지역 CBSA 사무소의 지역 책임자에게 면허 사실을 통지함
 - 이 때 관세사 면허 증서는 서명되어 신청자에게 전달됨

- 지역 책임자는 신청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면허 수수료를 수납하며, 이로써 관세사는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승인을 득한 것이 됨
 - 지역 책임자는 면허자문위원회 사무국에게 현장 조사 완료 사실과 수수료 수납 사실을 통지함
 - 관세사 면허 수수료는 1년에 600캐나다달러이며, 만기 도래 전 영업을 정지한 경우라도 본 수수료는 환불 되지 않음
 - 연간 갱신되는 관세사 면허 수수료는 면허를 내준 CBSA 사무실에 매년 지불하면 됨

- 만일, 관세사 면허의 신청 과정에서 불완전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면허 신청은 반려되며, 신청인은 추후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청할 수 있음

- 관세사의 면허 신청 시 CBSA 상업사무소가 있는 하나의 특정 지역을 업무 지역으로 하여 신청하며 이 지역은 면허 증명서에 표기됨
 - 그러나 관세사는 면허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도 업무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다면 타 지역에서 업무를 이행할 수 있음

다) 추가 면허 및 변경 신고

- 관세사 면허를 득한 관세사가 다른 CBSA 상업 사무소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적 면허로 영업하기를 희망할 경우, 동일한 금액의 담보(50,000캐나다달러) 제출과 함께 일반적인 면허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신청하면 됨
- 면허자문위원회의 사무국은 지역 책임자로부터 추가적인 면허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전에 신청했던 내용과 달라진 점이 없다면 이미 배경 조사 등의 확인이 완료된 내용이므로 면허를 승인할 것임
 - 그러나 변경 사항이나 문제점이 확인될 시에는 새로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
- 관세사는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유권 변경, 상호 변경, 사무실 이전, 전문 사무원·출자자·관리자의 변경 등 변경된 사항을 자격 면허 및 회계팀(Brokers Licensing and Account Security unit)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통지된 변경사항은 면허자문위원회의 사무국에게 전달되며,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AMPS(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ies System)⁷⁶⁾에 의해 벌칙에 처해질 수 있음

4) 면허자문위원회(LAC, Licensing Advisory Committee)

- 캐나다에는 면허자문위원회(LAC, Licensing Advisory Committee)를 두고 캐나다 치안부(Public Safety) 장관⁷⁷⁾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관세사 면허의 발급, 취소 및 각종 정책과 관련된 각종 문제에 대해 자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자문 업무는 ① 자격의 발급, 갱신, 정지와 취소, ② 전문 자격과 관련된 정책과 절

76) 캐나다는 2002년 AMPS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벌금형 적용을 통해 관세법의 법규준수도를 보장하기 위한 벌금 제도로, 위반 시 패널티는 3-Strike 제도로 첫 위반 시 단순경고가 문제가 마무리되지만, 위반사례가 AMPS 시스템의 기록에 남아 향후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됨
처벌의 종류는 단순 경고 또는 벌금형, 제품 압수, 고발조치로 다양함

77) CBSA는 Public Safety Canada(캐나다 치안부) 산하 조직으로서 장관(minister)은 치안부에 존재하며, CBSA에는 청장(president)과 부청장(vice-president)이 존재함

차, ③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 및 고소(complaints), 그리고 ④ 기타 관세사 자격과 관련된 사안임

- 이 자문 위원회는 CBSA의 관계자와 캐나다관세사협회, 캐나다 수출입연합회 등에서의 참석자들로 이루어지며, 의장을 포함하여 총 6명의 멤버로 구성됨
- 상세한 분석이 요구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하에 회의가 소집될 수 있으며, 연간 최소 2회 또는 회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횟수의 회의를 가지고 있음

라. 면허 및 업무의 개시⁷⁸⁾

- 면허신청을 통하여 승인을 받고, 전문 사무원을 고용한 경우에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1) 영업 유형

- 개인(individual), 조합(partnership), 법인(corporation)의 3가지의 형태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수입자 또는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CBSA와 업무를 수행함
- 법인으로의 관세사는 ① 캐나다에 설립되고, ② 관리자의 과반수 이상이 캐나다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져야하며, ③ 법인과 관리자 모두 도덕성을 지녀야 함. ④ 법인은 책임지고 업무를 행할 정도의 재원을 갖추어야 하며, ⑤ 적어도 1명의 직원이 전문 사무원이어야 하는데, 이 직원은 수출입과 관련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조합에는 개인으로 구성된 조합과 법인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있음
- 개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경우, ① 각 개인은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② 도덕성을 갖춘 자로서, ③ 18세 이상이어야 함. ④ 조합은 책임지고 업무를 행할 정도

78) D Memorandum D1-8-1

의 재원을 갖추어야 하며, ⑤ 조합의 적어도 1명의 직원은 전문 사무원으로, 이 직원은 수출입과 관련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함

- 법인으로 이루어진 조합의 경우, 구성 모든 법인이 법인으로서의 관세사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조합을 구성하는 적어도 하나의 법인의 적어도 1명의 직원은 전문 사무원으로 수출입과 관련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전문 사무원 채용 의무

- 전문 사무원(Qualified officer)이란 수출입과 관련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세사의 자격 요건(시민권 및 영주권, 원만한 성품, 18세 이상, 충분한 재원 등)을 충족함
 - 충분한 지식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관세사 업무 분야에서 계속 일해야 하며, 출자자, 관리자 또는 직원이 되어, 면허 관세사에게 고용된 전문 사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업무를 이행해야 함
- 관세사 업무를 영위하는 개인, 법인, 조합(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은 전문 사무원을 반드시 채용해야 함
- 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조합이 관세사 면허를 받은 경우, 전문 사무원은 법인의 출자자(partner)이거나, 관리자(director) 또는 직원(officer)이어야 함
- 개인으로 구성된 조합에 관세사 면허가 주어진 경우에는 전문 사무원은 출자자 중의 1명이어야 함
- 만일 개인으로 관세사 면허를 받은 때에는 독립사업체의 소유주가 전문 사무원이어야 함

- 전문 사무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며, 지식 및 경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업무 분야에서 전문 사무원으로 또는 관세사의 직원으로 일해야 함
- 만일 업무에 중단(break)이 발생할 경우, 그 사람은 더 이상 전문 사무원의 자격이 없게 되는데, 최대 업무 중단 기간은 발생 시기에 따라 6개월 이내 또는 12개월 이내로 상이함
 - 업무 중단이 1986년 11월에서 2002년 4월 사이에 일어났다면 그 기간은 6개월을 넘길 수 없고, 만일 2002년 4월 이후에 일어났다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만일 1986년 11월 이전에 발생했다면 중단 기간은 무관함
- 만일 업무 중단으로 인해 전문 사무원이 지위를 박탈당한 경우, 관세사 전문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다시 전문 사무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음

마. 의무와 책임

1) 의무

- 지역 책임자의 사무실 방문과 조사가 끝나고 면허료(600캐나다달러)를 지불함으로써 관세사는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됨
- 관세사 사무소에서는 CBSA의 D Memoranda 모든 규정에 항상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여 CBSA에 접속, Memoranda의 다운로드 및 열람이 가능해야 함
- 각 관세사무소는 서명이 들어간 관세사 면허증 또는 그 사본을 사무실에 진열해 놓아야 함
- 관세사는 고객들을 대신하여 제출한 회계 자료 사본을 고객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

○ 관세사는 통관 거래 번호와, 물품의 명세, 물품의 가격과 품목분류 번호, 환율 및 관세율 등이 기재된 증서를 수입자에게 제공함

□ 모든 관세사는 관세사로서 행한 금전적 거래에 대한 회계 자료와 장부 등을 보관하여야 하며, 자료의 보관 기관은 수입 시점으로부터 6년간임

○ 서류는 원본 또는 이미지화 된 사본, 기계로 판독이 가능한 매체 등의 형태로 보관이 가능함

2)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 캐나다 치안부(Public Safety) 장관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관세사 면허를 소지한 자가 면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에는 수출입 관련 의회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기 또는 사기의 시도, 관세 및 세금의 포탈 또는 포탈 시도, 포탈을 제안한 경우가 포함됨

○ 그 외에도 지급불능 또는 부도가 발생하였거나, 관세사 자격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부정행위, 관세사로서의 의무와 책임 이행에 실패한 경우, 관세사 업무를 중단한 경우, 규정에 의해 더 이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모두 정지 및 취소사유에 해당됨

□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관세사는 등기 우편을 통해 정지 또는 취소의 이유와 정지·취소 일자 및 정지 기간 등을 통지 받게 됨

□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직접 또는 서면으로 자격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해 항변할 기간을 가지며, 만일 타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지 및 취소 처분은 철회될 수 있음

□ 면허 정지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가 해결될 경우 면허의 효력은 다시 복귀될 수 있으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면 복귀는 불가능 함

- 면허가 취소된 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면허를 다시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함

바. 캐나다 관세사협회

- 캐나다에는 관세사협회(CSCB, Canadian Society of Customs Brokers)가 존재하며, 이는 회원인 관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회원과 그들의 고객들을 대신하여 국제 무역과 관련된 국가 정책 등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역할을 함
- 캐나다 관세사협회는 1990년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의 창설 회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
- 회원들에게 세미나 교육 과정 등으로 교육 및 전문성 계발 기회를 제공하며, 최신의 관련 정보를 제공함
 - 관세사협회에서는 CCS(Certified Customs Specialist), CTCS(Certified Trade Compliance Specialist) 등 전문가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통관, 무역분야에 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현재 160여 개의 관세사법인 회원을 포함하여 3,800명의 CCS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역과 무역 서비스 편의를 위해 관세사 외에 연합 회원도 확보하고 있음
 - 관세사협회 홈페이지⁷⁹⁾에서는 지역별로 영업 중인 관세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세사 외 물류사나 기업 등 연합 회원의 연락처도 획득할 수 있음

79) <http://cscb.ca>

4. 일본

가. 개관

- 일본에서 수출입 신고, 통관 대리 및 불복 신청을 대리하는 자의 명칭은 통관사(通關士)이며 이들은 통관사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고, 주로 통관업자에게 고용됨으로써 통관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 통관사는 국가시험인 통관사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바로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며, 근무처의 통관업자의 신청에 의한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통관 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 2012년 현재 일본에서 영업하는 통관업체의 수는 1,400여 개이며, 영업소는 2,100여 개소이며, 지역적으로는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지역에서 영업하는 통관업자의 수가 많음

〈표 Ⅲ-8〉 일본의 통관업체 및 영업소의 수

(단위: 사(社), 개소)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통관업체	1,355	1,382	1,395	1,396	1,416	1,431
영업소	2,092	2,124	2,113	2,097	2,139	2,144

자료: 재무성 관세국(www.customs.go.jp)

〈표 Ⅲ-9〉 2012년 세관별 통관업체 수 현황

(단위: 개)

세관	하코다테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모지	나가사키	오키나와	총
통관업체	49	283	276	138	254	218	146	43	24	1,431
영업소	93	447	367	230	354	315	247	62	26	2,144

자료: 재무성 관세국(www.customs.go.jp)

- 일본의 통관사 제도는 관세의 신고납세 제도의 이행과 관련하여 1967년에 「통관업법」의 제정과 더불어 도입되었음
- 일본은 현재 「통관업법」과 동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통관업법 기본통달」 등에 관련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음
- 「통관업법」은 통관업의 허가 및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비롯하여 통관사 시험과 그 자격,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통관업법은 세관물품취급인법(1901년)을 개정한 법률로 최근에는 2009년 개정된 바 있음
- 통관 수속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통관업자가 세관에 제출하는 신고서류 등의 통관 서류가 적정하여야 하는 바, 통관 업무를 하는 영업소마다 원칙적으로 통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 경험을 가진 전문가인 통관사를 두어 세관에 제출하는 신고서류 등의 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나. 직무 범위

- 일본 「통관업법」 제2조의 1에서 통관 업무에 대해 나열하고 있으며, 타인의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대리·대행 행위 및 서류의 작성이 통관사의 직무에 해당됨
- 통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수출입 신고 및 세관에 이행하는 각종 신고 절차 또는 행위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업무를 주로 행함
 - 수입 신고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HS 품목분류, 관세·소비세의 계산, 신고서 작성 및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 시스템(NACCS)⁸⁰⁾을 통한 신고서의 세관 제출 등의 업무도 기본적으로 행하고 있음

80) Nippon Automated Cargo Clearance System, EDI 방식의 일본 전자통관시스템임

- 통관사가 대리 또는 대행하는 업무는 대표적으로 수출입 신고를 포함하여 「관세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세관에 이행하는 각종 신고·승인의 신청부터 허가·승인을 얻기까지의 절차임
 - 수입 신고 시 특례신고서의 제출로 신고납세를 대신하기 위한 특례 수입자 승인 신청⁸¹⁾
 - 일본과 외국 간 왕래 선박·항공기로의 선용품 또는 기용품 적재 신고
 - 보세창치장, 보세공장, 종합보세구역에 외국물품 장치 및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을 보세작업에 사용, 종합보세구역에서 승인 대상 행위의 승인 신청, 보세전시장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관계되는 신고 등

- 「관세법」 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해 「행정불복심사법」 또는 관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장 또는 재무대신에게 하는 불복신청을 대리함⁸²⁾
 - 불복신청, 세관관청의 조사, 검사 또는 처분에 대해 세관관청에 하는 주장 또는 진술을 대리함

-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불복심사법」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관청이나 재무대신에게 제출하는 통관절차 또는 불복신청 관련 신고서, 신청서, 불복신청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행함
 - 서류의 작성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이 전자적 기록을 포함함

- 「통관업법」에 규정된 대리·대행 및 서류 작성 업무 이외에도 EPA⁸³⁾ 활용 자문 등의 업무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81) 관세법 제7조의2제1항

82) 수입자는 세관이 수출입 허가를 해주지 않거나 특정 행정 처분을 한 경우 항의(이의 신청)할 수 있고, 이로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재무장관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통관사가 이를 대리·대행할 수 있음

83)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동반자협정). 일본은 FTA 대신 EPA를 체결하고 있음. 일본은 2013년 2월 현재 ASEAN 및 멕시코, 스위스, 페루 등 총 13개 국가(연합)와 EPA를 체결 중임

- 일본의 통관업자는 통관 서비스 이외에 물류·운송 주선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며, 통관업자는 수출입자 및 보세운송업자 등과 함께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 대상임⁸⁴⁾
- 일본 관세국은 수출입자가 통관업자에게 통관 및 관련 업무를 의뢰한 경우에 대해 통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요금 규정을 두고 있음⁸⁵⁾
 - 예를 들어 수출 신고의 경우 5,900엔, 수입 신고로서 신고 납세하는 경우 11,800엔, 외국화물선(기)용품 적재 신고 시 5,100엔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처럼 특정 업무에 따른 요금표를 관세국 홈페이지에 게시함

다. 자격 취득 방법

1) 자격 요건

- 통관사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관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그 후 통관업자에게 고용되고, 세관장에게 확인(시험 합격 사실과 결격사항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심사)을 받고 난 후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 통관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통관사라는 명칭으로 통관업무에 고용하기 위해서는 통관업자는 그 자의 성명, 종사하게 하려는 영업소 명칭, 통관사 시험의 합격증서 번호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받아야 함⁸⁶⁾
- 통관사가 피고용을 위해 확인을 받았던 통관업자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 통관사의 자격이 상실됨
 - 그 외에도 그러한 확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임이 판명된 때와, 결격

84) 관세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통관업자는 2013년 1월 현재 63개 업체임

85)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sonota/9101_jr.htm

86) 통관업법 제31조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통관사 시험의 합격이 취소 시 통관사의 자격을 상실하게 됨

2) 통관사 시험

- 통관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통관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 시험은 통관사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임
 - 본 시험은 1967년부터 매년 1회 실시되어 오고 있음
- 일본에서는 통관사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해서 즉시 ‘통관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통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인 통관업자에게 고용되어야 함
 - 일본의 통관사 자격은 독립 개업형 국가자격이 아닌, 통관업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통관사 명칭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임

〈표 Ⅲ-10〉 최근 통관사 시험 응시자 및 합격률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7년 (제41회)	2008년 (제42회)	2009년 (제43회)	2010년 (제44회)	2011년 (제45회)
원서제출자	13,727	13,267	13,159	12,087	11,760
응시자	10,695	10,390	10,367	9,490	9,131
수험 비율	77.9	78.3	78.8	78.5	77.6
합격자	820	1,847	807	929	901
합격률	7.7	17.8	7.8	9.8	9.9

자료: 재무성 관세국(www.customs.go.jp)

가) 시험 과목과 형식

- 일본의 통관사 시험의 과목은 ① 「관세법」, 「관세정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및 「외환 및 외국무역법」(동법 제6장에 한함), ② 통관 서류의 작성 요령 기타 통관 절차의 실

무, ③ 「통관업법」 3과목임⁸⁷⁾

-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에는 「관세잠정조치법」, 「ATA 조약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됨⁸⁸⁾

〈표 Ⅲ-11〉 통관사 시험 과목 및 시간

교시	시험 과목	시험 시간
1	통관업법	50분
2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등	100분
3	통관 서류의 작성 요령 기타 통관 실무	90분

주: 2011년 기준
자료: 재무성 관세국(www.customs.go.jp)

- 통관사 3과목 시험은 총 4시간(240분)의 시험시간을 가지며, 필기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됨
 - 필기 방식의 시험은 다지선다형 객관식 또는 단답형 주관식임
 - 통관 실무 과목의 경우 문제와 관련된 관세율표를 별책으로 제작하여 시험 시 배포함
- 통관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재무대신이 결정하는 문제로 실시되고 있으며, 채점은 시험위원회에 의해 행해짐
 - 학식 경험이 있는 15인 이내의 시험위원이 매회 통관사 문제의 작성 및 채점을 위해 재무대신에 의해 위촉됨
- 통관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를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함
- 통관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3천엔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비용은 실

87) 통관업법 제23조 제2항

88) 통관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환불되지 아니함

-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 시스템(NACCS)을 이용하여서도 응시 원서 제출 및 시험수수료 납부를 할 수 있음

□ 통관사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는 각 3개의 과목에서 60% 이상을 취득해야 함

- 단, 통관실무 과목의 경우 본 과목 내 수출신고서와 수입신고서 각 1문제와 기타 실무 15문항에 대해 각각 60%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함

□ 세관장은 통관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당해 시험을 합격한 것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그 성명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함

나)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 일본은 관련 분야의 경력자에 대해서는 경력에 따라 통관사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음⁸⁹⁾

□ 통관업자의 통관업무 또는 관청에서의 관세 기타 통관 관련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는 관세법 등 법률 과목, 통관 실무(2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며, 통관업무 또는 관청에서의 통관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는 통관 실무 과목 시험을 면제함

- 업무는 특별한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계적인 사무 이외의 것으로 함

□ 본 규정에 의해 시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하는 때에 시험과목 일부면제 신청서에 면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응시 장소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세관장은 면제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결과를 문서로 신청자에게 통지함

89) 통관업법 제24조

- 세관장은 부정한 수단으로 통관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응시하려한 자, 시험과목을 면제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해 합격결정을 취소하거나 응시를 금지할 수 있음
 - 정상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할 수 있음

라. 허가 및 업무의 개시

1) 통관업의 허가

- 통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곳을 관할하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통관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세관장은 통관업 허가에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조건은 통관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함
 - 통관업 허가 시 통관업무 수행 지역 한정 조건이 부여된 경우에는 당해 한정된 지역에서만 통관업을 할 수 있음
 - 허가에 부여된 조건 위반은 1년 이내의 업무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대상임⁹⁰⁾
- 통관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명칭과 주소 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와 함께 법정 서면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통관업 허가신청서에는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통관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영업소별 책임자 및 통관사의 수 등이 기재되어야 함
 - 그 외에도 통관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 취급물품이 한정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종류, 통관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를 기재해야 함
- 허가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로는 신청자의 자산 상황을 나타내는 서면과 신청자의 주민표 사본 및 이력서(법인인 경우 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 임원 명부와 이력서) 등 관

90) 통관업법 제34조

련 서면⁹¹⁾을 첨부해야 함

- 기타 첨부서류로 허가신청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연간 취급 예상 통관업무의 양 및 산정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음

□ 세관장은 통관업 허가 전 신청자의 업무 수행 능력, 사회적 신용 등 몇 가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함

- 그 기준으로는 통관업 경영의 기초가 확실한지, 신청자가 그 인적 구성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 신용을 가지는지를 심사함
- 그 밖에도 통관업을 개시하는 것이 그 지역의 통관 업무량과 통관업자 수를 고려할 때 필요하고 적당한지와 영업소 별로 전임 통관사를 1인 이상 두도록 하는 요건을 갖추는지를 심사함

□ 세관장이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허가증을 교부함

2) 통관업 허가 결격사유

□ 일본은 통관업 허가에 있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⁹²⁾ 허가신청자가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업 허가를 하지 아니함

□ 허가신청자는 성년 피후견인⁹³⁾ 또는 피보좌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어야 함

□ 또한, 공무원으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고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와 통관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진 자로서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

91) 통관업법 시행규칙 제1조

92) 통관업법 제6조

93) 후견인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사람. 친권을 이행할 사람이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임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도 허가를 받을 수 없음

- 그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통관업 허가를 받는 등의 행위로 통관업의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통관업무 종사 금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법인으로서 임원 중에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등은 통관업 허가를 획득할 수 없음

3) 허가의 소멸 · 취소와 변경

- 통관업자가 통관업을 폐지하거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파산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관업의 허가가 소멸됨
 - 만일 허가 소멸 시 진행 중인 통관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를 받고 있던 자(사망한 경우는 상속인,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가 계속하여 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봄
 - 통관업의 허가가 소멸한 때에는 세관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함
- 반면, 세관장은 특정 사유의 발생 시 통관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통관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통관업의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때, 통관업 결격사유 중 일부에 해당되게 된 경우임
- 세관장이 통관업자의 허가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심사위원은 3인 이내로 통관업무에 관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함
- 통관업자가 본인이나 영업소의 주소나 명칭 등이 변경되거나 통관업 이외에 경영하던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통관업의 허가가 소멸된 경우, 결격사유 중의 일부에 해당되거나 신규 영업소 설치를 하게 된 경우에는 변경 등을 즉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통관업자가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소를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책임자 성명 및 통관사의 수 등이 기재된 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통관업자가 허가를 받을 때 통관업무 수행 지역을 한정하는 조건이 부여된 경우에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통관업을 할 수 있음

마. 의무와 책임

1) 통관업자의 의무

- 일본 통관업법 제13조 내지 제22조⁹⁴⁾에는 통관사의 업무 내용을 규정함
- 통관업자가 통관사를 채용 시에는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소별로 전임 통관사 1명을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통관업무의 양으로 보아 전임 통관사를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세관장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전임을 둘 필요는 없음
- 통관업자는 타인의 의뢰에 따라 제출하는 통관 서류(수출입신고서, 선·기용품 적재신고서, 불복신청서 등)에 대하여 통관사에게 그 내용을 심사하고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함
- 통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세관관청에 한 납세신고에 대해 경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경정이 관세액을 증가시키는 것일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통관업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함
- 통관업자는 그 명의를 타인이 통관업을 위해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됨
- 통관업자는 통관업무의 영업소에 의뢰자가 보기 쉽도록 요금액을 제시하여야 함

94) 통관업법 제2장(통관업) 제2절(업무)

- 통관업자 및 통관사 기타 통관업무를 하는 직원은 통관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남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되며, 신용 또는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통관업자는 통관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수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통관업무 관련서류를 일정 기간(3년) 보존할 의무가 있음
 - 영업소별로 취급 건수 및 수령한 요금을 기재하며, 건별로 의뢰자의 성명, 물품의 품명과 수량, 통관업무 관련 신고서, 신청서 등 제출일자, 수리번호 등 참고할 만한 사항을 기재해야 함
 - 보존 의무 서류는 통관업무에 관련하여 세관관청 등에 제출한 신고서, 신청서 등의 서류 사본과 통관업무를 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요금 수령 증명 서류의 사본임
- 통관업자는 통관사 기타 통관업무를 하는 직원의 이름과 그 이동 사항을 세관장에 신고하여야 함
- 통관업자는 통관업무 건수, 이들에 대해 받은 요금액 기타 통관업무 관련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매년 1회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2) 징계 및 벌칙⁹⁵⁾

- 통관업자 또는 통관업자의 임원 기타 통관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관세법 또는 통관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통관업자의 신용을 해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세관장이 업무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함
- 통관사가 통관업법 또는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 위반 시 세관장은 통관

95) 통관업법 제41조 내지 제45조

사에게 계고하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무 종사를 정지하거나 2년간 그 자가 통관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음

- 통관업자 또는 통관사에게 관련법의 위반 등 징계사유가 되는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세관장에게 그 조사를 신청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통관업자의 업무 정지 및 허가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관업무에 관한 학식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관사의 업무 정지 또는 금지 시에는 통관사가 종사하고 있는 통관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허위 기타 부정확한 수단으로 통관업의 허가를 받거나 영업소 신설 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통관업자 및 통관사가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남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및 통관업자에 대한 통관 업무 정지 처분에 위반하여 통관 업무를 행한 자도 같은 벌칙에 처해짐
- 통관업자가 통관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고용하기 전 세관장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기타 부정확한 수단으로 확인을 받거나, 통관사에 대한 징계처분(정지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 통관업무에 종사한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통관업자는 재무대신이 정한 것에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세관장의 보고 또는 질문 등 검사에 대해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경우 5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관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세관 직원이 통관업자에게 질문 또는 장부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데 이때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동일한 벌금에 처함
- 통관업자 또는 통관사가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통관업자·통관사가 아니면서

그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등은 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인의 대표자 혹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직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금형에 해당하는 일부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함(양벌규정)

바. 일본 통관업연합회

- 일본에는 우리나라 관세사회와 유사한 성격의 단체로 일본 통관업연합회(JCBA, Japan Customs Brokers Association)가 존재함
- 사단법인 형태로 1994년에 설립된 본 연합회는 급변하는 국제 무역 현황,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수출입 통관 원활화에 기여하고, 국제 무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됨
 - 현재 도쿄, 요코하마, 고베 등 전국에 총 9개의 통관업회(通関業会)를 두고 있음
- 일본통관업연합회는 1990년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의 창설 회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
- 통관업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 통관 업무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통관업무에 관한 연수, 강연 및 국제 회의를 실시하며, 통관 업무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하고 있음
- 일본통관업연합회에서는 통관사 시험에 합격한 자와 통관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통관전문 연수를 실시하며, 또한 매년 통관사 시험을 대비한 통신 강좌를 실시하고 있음
 - 통관전문 연수는 관세평가, 감면, 농수산물 또는 섬유, 화학제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등 실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지며, 통관사 시험 대비 강좌는 통관사 시험 과목에 대한 지도와 모의시험 등으로 진행함

- 또한, 일본의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의 통관 처리와 관련하여 연합회에서는 통관정보제공시스템인 CCIS⁹⁶⁾를 운영하고 있는데, CCIS에서는 수출입 허가·승인 데이터를 입수하여 보관하고 데이터 제공을 희망하는 수출입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음
 - Air-NACCS와 Sea-NACCS를 이용하여 동관이 이루어진 수출입 관련 데이터가 제공되며 이러한 데이터는 수출입 신고의 파악, 통계 작성 및 사후 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유용함

- 그 외에 밀수 근절 캠페인 실시와 권총, 마약 등 사회악 물품에 대한 세관에 정보 제공 등으로 인식 개선 업무 등도 하고 있음

- 일본 통관업연합회의 홈페이지에서는 전 지역의 통관업자의 검색이 가능하며⁹⁷⁾, 통관사 시험 및 전문 교육에 대한 안내와 최신 주요 이슈 등을 살펴볼 수 있음

5. EU

가. 개관

- 각 EU 회원국은 제3자를 대리하여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에 대하여 다른 관행을 가지고 있음
 -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경우 이러한 통관업무는 전부터 특별한 신뢰와 신용을 가진 자에게 한정되어 있음
 -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 통관 대리에 관하여 관세당국으로부터 심사받아야 하는 요건 또는 자격 등을 규정하지 않음

96) CCIS는 일본통관업연합회의 등록 상표임

97) 홈페이지: www.tsukangyo.or.jp(지역별 통관업자 조회: www.tsukangyo.or.jp/sh)

- 2012년 기준 유럽공동체 국가 중 법적으로 관세사 자격을 관리하는 국가는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몰타, 사이프러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을 포함한 7개국임⁹⁸⁾
 - IFCBA에 가입된 EU 회원국으로는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터키의 4개국뿐임
- EU 회원국의 관세당국은 국제무역에 관한 통관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하도록 하되 관세당국과의 통관업무 및 대리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전문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통관 절차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과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보장받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필요로 하게 됨
 - 공공기관의 평가, 시험 또는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게 됨
 - 통관 대리업무 수행에 특정인에게 제한을 두지 않는 국가 또한 전문가 또는 전문가 이하의 수준으로 운송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자(forwarding agent 등)에게 제3자를 대리하여 통관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EU 회원국은 관세사 제도가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비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사 제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장임⁹⁹⁾

나. 통관대리의 유형

- 유럽공동체 관세법(Modernised Customs Code) 제11조는 통관대리업무를 직접대리(Direct representation)과 간접대리(Indirect representation)의 형태로 영위하도록 규정함¹⁰⁰⁾

98) Czyzowicz, Wieslaw & Ewa Gwardzinska, "Customs Representation in Poland," *Customs Scientific Journal* 2012

99) EU, The impact of the customs representation on the EU's competitiveness and security, Explanatory memorandum, 2007. 5

100) Regulation (EC) No. 450/2008

- 통관 대리인의 위임 유형은 직접대리와 간접대리로 구분됨
 - 직접대리는 대리인이 제3자를 대리하여 본인의 명의로 업무를 대행하며, 수입신고 대리인에 대해 관세납부의무를 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간접대리는 대리인의 명의로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대리인에 대해 관세 납부의무를 대리해야 하는 부담없이 통관절차의 이행에 대한 의무만 발생함

- 유럽공동체 관세법 제5항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관세당국과 관세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음을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원국은 직접대리를 선택하고 있음
 - 수입신고 대리인에 대해 관세납부의무를 대리해야 하는 부담 없이 통관절차의 이행에 대한 의무만 발생하기 때문

- 관세사(customs broker)가 간접대리와 직접대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이질적인 관행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EU 회원국들은 현재 두 가지 유형으로 통관업을 수행하고 있음

- 첫 번째 유형은 대체로 직접대리 한 가지 형태로 통관 업무를 영위하는 전문 사업체를 운영하도록 하고, 간접대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완화하도록 함¹⁰¹⁾
 - 통관 대리 업무는 국가고시를 합격하여야 하는 ‘전문 직종(a profession)’으로 간주되며, 영업활동의 요건과 규칙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다른 하나는 누구나 제한 없이 간접대리와 직접대리를 불문하고 통관 업무를 영위하도록 하는 유형임
 - 누구나 제3자를 대리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자유를 부여하여 일반적으로 ‘forwarding agents’, ‘clearance agents’와 ‘shipping and handling agents’ 등의 통관을 대리할 수 있음
 - 이러한 통관대리업체로서 관세사가 사용되는 국가는 영국, 독일이 있음

101) 「Ⅳ.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관세사제도 비교」에는 프랑스의 제도만 일부 포함시킴

다. 프랑스의 관세사 제도

1) 개관

- 프랑스의 관세사 자격은 1935년 ‘Decree 30/10/1935’ 에 최초로 규정된 이후, 통관 대리 업무를 배타적으로 행사하도록 관세당국으로부터 전문자격으로서 공인을 받도록 규정함¹⁰²⁾
- 프랑스 관세법(Code des douanes) Titre IV: Opérations de dédouanement section 2(제86조 내지 제94조) 및 ‘Decree of 22 December 1998’에 통관신고 대리인 (commissionnaires en douane; customs agents)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음

2) 직무 범위

- 관세사(courtier en douane) 또는 통관대리인(commissionnaire en douane)으로 승인받은 자만이 통관 업무를 대리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음
 -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청에 등록된 관세사, 통관법인, 관세사법인의 명의로만 가능함
- 모든 권한 위임은 관세·간접세 관리청(The General Direction of Customs and Indirect Tax)의 회계 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1인 이상의 고용인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음
 - 수출입 신고를 대리하도록 승인받은 자는 위임장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음
 - 대리인 자격의 법인 등은 EC 역내에 설립된 사업장이어야 함
- 직접대리의 형태로 통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함

102) 2007년 기준으로 825건의 관세사 자격을 갖춘 자가 통관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20명의 관세사가 배출되고 있음, EU(2007)

- 관세사는 직접 수입신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고 물품을 통관함
 - 대리인으로서 신고 권한을 위임받은 통관대리인인 경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통관과 관련한 권한을 가짐
 - 자신의 계산으로 수입하는 통관대리인은 본인이 수입신고인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가짐

- 관세사는 해당 수입신고에 대한 관세납부의무를 대리해야 함
 - 관세사는 제 3조항에 따라 자체 직원에게 위의 관세납부의무를 세부적으로 위임할 수 있음

- 관세사는 General Tax Code 제289조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세금계산서에 명시하여야 함
 - 제3자를 대리하여 납부한 관세 등은 세관에 납부한 담보로 변제될 수 있음¹⁰³⁾

- 관세사의 보수에 관한 요율은 법령에 따라 규정된 금액에 따라야 함¹⁰⁴⁾

- 외국인 또는 해외 법인도 관계법령에 따라 프랑스에서 통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승인받을 수 있음

3) 자격 취득 방법

- 관세사 자격 승인, 자격 정지 및 취소는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와 관세·간접세 관리청에서 주관함

103) 프랑스 관세법 제381조

104) Decree 50-261

가) 자격 요건

- 프랑스의 관세사는 재무건전성, 관련 업무경력 및 법규 준수도를 요건으로 함
 - 업무경력은 통관업무에 관하여 기술적인 능력과 전문 지식을 갖췄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등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사 자격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

나) 자격 시험

- 프랑스 관세사 자격 전문시험은 별도의 자격 시험 없이, 전문경력 기술서 (Reconnaissance des acquis de l'expérience professionnelle, R.A.E.P)를 제출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이는 이전의 통관 관련 학업, 지식 습득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에서 사기업, 공공기관 등에서의 관련 업무경력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2007년에 경력 인정 현대화의 일환으로 마련됨
 - 포괄적인 용도로서 관세·간접세 관리청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관련 업무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사용됨
- 통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 내역, 관련 업무에 관해서는 직장명, 직위, 근무기간, 업무 수행 내역, 실적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다) 자격 취득 절차

- 자격 신청은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유형에 따른 서류를 관세·간접세 관리청에 제출함
- 개인의 경우 법규준수도에 관한 증빙자료와 각 예정 사업장 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

여야 함

- 신원 조회를 위한 전과 범죄 기록부(bulletin N°3)나 비거주자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범죄기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제출함
- 사업계획서 또는 관세사 자격 취득으로 인한 포부 및 기여도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의 경우 관리자급 구성원의 법규준수도 증빙자료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직의 규정과 법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함

- 해외지사에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사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개요, 법령,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자격 심사는 지역별 관리국(Regional Direction)의 조사를 거쳐, 관세·간접세 관리청에 적격 여부 심사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 심사의 시작은 자격 신청서 접수일로 간주됨
- 심사 과정에서 관세청장은 추가서류를 요청하거나 자문 위원회의 추가심사를 요구할 수 있음
- 각 심사 과정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됨

□ 재무부의 최종 심사 소요기간은 관세청장의 심사의견 제출시기를 기점으로 최대 2개월이며, 2개월 안에 최종 결과를 통보받지 않는다면 최종 승인으로 간주함

- 관세사 자격 심사의 조사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최종 심사에 관여하던 관세사자격 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mmittee)는 2009년 폐지됨

□ 관세사 자격이 거부될 경우 관세청에 신청인에게 개인적으로 통보함

- 관세사 자격이 거부된 신청자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 내에 관세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관세사 자격의 승인이나 연장 등은 관세청 공고 후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에게 공문으로 직접 통보함
- 관세사 자격은 구체적인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무기적으로 유효함
- 특이사항으로 프랑스의 관세사 자격은 프랑스 국내 사업장과 허가받은 해외 사업장에서서의 관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함
- 자연인 또는 법인이 관세사 자격이 심사 과정 중이거나 하나 이상의 세관에서 통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세사 자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 승인 신청을 통하여 잠정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음
- 잠정 승인의 효력은 관세청장의 승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발생함
 - 다만, 이는 관세청장이 거부하는 경우 거부 통지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무효로 간주됨

4) 신고 및 업무의 개시

- 관세사 자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관 업무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시설과 자격 승인을 받은 개별 사업장별로 상업 등기를 마쳐 관세사 영업으로 인한 납세 신고 준비를 마쳐야 함
- 기한 내에 이에 대한 증빙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없음
- 또한 관세사 업무 개시와 함께 관세청 회계 관련 부서에 업무 내역을 신고해야 함
 - 관세사가 비영리적이거나 비정기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간소화된 신고를 허용함
 - 관세사 자격 승인을 받은 자가 통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를 단독으로 고용할 경우 이를 관세청 회계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함

5) 의무와 책임

-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세·간접세 관리청에 매년 사업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관세사 업무 등록이 완료된 사업장에서의 업무 수행을 증명하여야 함¹⁰⁵⁾
 -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관세사 자격이 취소됨

- 통관 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련서류를 세관신고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함
 - 취급한 통관 업무에 관해 의뢰자 성명이나 기관 이름을 연도별로 기록해야 함
 - 주문서 혹은 수입승인 신청서, 세관신고서, 운송서류, 포장명세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보험증서, 기타 추가비용에 관한 증명서 등 해당 통관 업무에 관한 서류 사본을 보관해야 함

- 관세청장은 관세사 자격을 승인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승인받은 단체가 해산할 경우 해당 수출입업자에게 이를 통보함

- 관세·간접세 관리청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관세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자격 승인 이후 법인 구성원 내역의 변동 사항을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변경 사항이 관세사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 관세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 관세사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세법을 위반하거나 기타 합법적인 세관 서비스의 책임에 어긋난 행위를 범할 경우 관세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105) Decree 22/12/1998 제24조

6) 프랑스 운송·물류연합¹⁰⁶⁾

- 프랑스 운송·물류연합(Federation des Entreprises de Transport et de Logistique de France, TLF)은 모든 무역체인과 물류운송업체를 포함하는 프랑스의 유일한 전문 기관임
 - 2011년 프랑스 공식 사업자 순위로 상위 50대 운송·물류기업 중 40개의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음
 - 국내외 20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음
 - 4,500여 개의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이들의 판매액은 총 190억유로에 달함
 - TLF 회원 기업의 직원 수는 총 220,000명에 달하며, 이는 통관회사 근무자의 80%, 자동차운송회사 근무자의 50%, 택배운송회사 근무자의 80%, 물류회사 근무자의 80%, 운송회사 근무자의 80%에 상응하는 숫자임

- 프랑스 운송·물류연합은 프랑스 운송·물류업 관련 기업의 대표, 홍보, 보호를 목적으로 함¹⁰⁷⁾
 - 운송·물류업의 모든 분야를 대표하는 조직의 설립을 추구함
 - 모든 규모와 분야의 운송·물류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현대적이고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구축함
 - 운송·물류업의 경제기여도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운송·물류업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유럽공동체 내에서와 국제사회에서 프랑스 운송·물류업을 보호하고 대표함
 - 변화하는 사회적 규제, 법률, 경제환경 등에 대처하여 운송·물류업의 진화를 도모하고자 함

- TLF 내에는 무역협회와 위원회가 분야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위원회는 분야의 실무진으로 구성됨

106) TLF 홈페이지: <http://www.e-tilf.com/accueil.htm>

107) Rhône-Alpes Auvergne TLF 홈페이지

- 자동차운송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철도운송업, 자동차대여사업, 관세 및 통관업 등 분야별로 위원회가 운영됨
- 물류위원회는 2002년부터 분야의 국제화에 따른 지침의 수립을 목적으로 함
 - 물류위원회 내에서 세부적으로 물류창고 안전관리, 위험방지(risk prevention), 환경보호정책, 물류업에 관한 법적 및 제도적 변화 등에 관한 이슈를 분석함
- 철도위원회는 2004년부터 사업체 소유자, 인프라 관리자, 국가감독당국과 유럽공동체감독 등 특정 회원의 전문이익을 보호함

라. 기타 국가들

1) 이탈리아

- 이탈리아에서 관세사(spedizione doganale)는 오랫동안 관세당국과 무역업자의 중심 역할을 해 옴
- 처음 관세사 자격을 규정한 법령은 1864년 ‘The Decree of the King 14’으로 관세 법령에 관한 자질을 갖추고 본인의 책임으로 통관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동시에 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로 하여금 통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함
 - 그러나 이탈리아가 실질적으로 통합된 1861년까지 각자 통관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 제도를 운영하는 여러 주가 분산된 상태로 존재하였음
- 관세사 자격은 이후 계속 제3자를 대리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하도록 관세당국으로부터 유일하게 자격과 책임을 부여받아 운영되었음
- 유럽관세법(The Community Customs Code, Reg 1913/1992)의 제정 이래 직접대리는 관세사에게만 한정됨
- 기타 간접대리는 자율적으로 전문 자격요건 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거래당사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게 됨

- 다만 물품의 화주로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관세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2000년 ‘The Law n.213’은 관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법학 또는 경제학 관련 학위를 소지할 것을 새로 규정하고 관세사 명칭을 보다 권위 있는 ‘doganalista’(관세사)로 변경함
- 소위 전문자격 법률인 ‘The Law n.1612’에 관세, 내국세, 물품 반출, 환율 등에 관련된 관세사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음
-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이상의 업무 경력과 관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관세당국은 신청인이 통관업무를 수행하고자 신청한 지역을 명시하여 당해 지역에서 배타적인 통관업을 영위할 권한을 부여함
- 관세사 자격 취득 이후에도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를 대리하여 관세사회(The National Council of Customs Brokers)를 운영하여 관세사의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2007년 기준으로 2,284건의 관세사 자격이 있음

2) 영국

- 영국에서 통관 대리업무는 여러 당사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전문 직종으로 간주되지 않음
 - ‘handling agents’, ‘shipping agents’, ‘clearing agents’, ‘customs consultants’, ‘customs broker’ 등 이 중 어느 것도 법에 규정된 전문 직종(regulated profession)

은 아님¹⁰⁸⁾

- 유럽공동체 관세법 제5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관업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규정과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을 뿐 별도의 통관업무 대행에 관한 법령은 없음
- HMRC notice no.199(2004. 1.) 7.4.1 ~ 7.4.3에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직접대리와 간접대리의 방법으로 위임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화주가 대리인(agent)에게 수입신고를 대행시킨 경우 대리인 또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대리유형에 따라 채무유형이 다름
- 통관대리인이 본인(예: 수입신고인)을 대신하여 직접대리인으로서 수입신고한 경우 본인이 관세채무를 부담함
 - 유럽공동체 관세법에 따라 수입화주를 대신하여 관세사가 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인(declarant)으로서 납세의무가 발생함
 -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대리인은 수입자 본인을 대리하여 제2의 대리인(sub-agent)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계약하여야 하며, 당해 조항이 없는 경우, 제2의 대리인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수입신고 업무를 위임받지 않음
- 통관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간접대리인으로서 수입신고한 경우 대리인과 본인이 연대채무자로서 관세채무를 부담함
- 직접대리인 또는 간접대리인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정황에 입각한 근거와 당사자의 공식적인 서면 수권서로 정해짐
 - 그러나 공식적인 서면 수권서는 법적으로 효력은 없음
- 서면수권서가 없는 경우 본인 단독으로 행위하는 위험을 지게 되는 것임

108) http://www.dfes.gov.uk/eropeopen/eutouk/authorities_list.shtml

- 수권서가 대리 유형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간접대리인으로 간주됨
- 두 경우 모두 대리인으로서 관세채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수권받을 것을 권고함

3)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관세사 업무는 법령에 의한 규제 없이 기본적으로 판례법(the Dutch case law)에 따른 관행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주로 네덜란드 운송인 협회(the Dutch Forwarding Agents Organisation)인 'Fenex'에 의해 확립된 네덜란드 운송업 규정(Dutch Forwarding Conditions)에 따라 통관업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이는 운송인 협회에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Fenex-conditions'로 사용되고 있음
- Fenex-conditions의 네덜란드 민법(the Netherlands Civil Code) 1348조에 따른 법률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계약 조건(common widespread conditions of contract)으로서 당사자에 합의된 이해관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짐
- 판례법에 따르면 이 Fenex-conditions는 전세계 운송인이 사용하는 업무 규정과 유사하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이 규정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아도 관행상 법률로 간주되고 있음
- 과거에는 관세사의 통관업무는 간접대리로만 이루어져 관세사는 직접 관세채무를 부담해야 했음
 - 네덜란드 관세통관시스템(SAGITTA)의 신고기능 설정이 제한되어 있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임

- 이는 관세사의 통관업무 수행에 있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통관업협회가 관세사 통관업무의 직접대리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음

- 통관시스템 개선으로 2005년부터 관세사의 직접대리 및 간접대리로서 통관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음

IV.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관세사 제도 비교

1. 국제비교

가. 관세사 제도에 관한 법령

- 우리나라는 「관세법」 이외에 별도로 관세사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관세사법」을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관세사법」은 관세사 자격과 시험, 등록과 개업,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관세법인, 관세사회, 징계,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는 관세법과 별도로 「관세사 허가 규정(Customs Brokers Licensing Regulations)」과 CBSA의 D-Memoranda에 관세사 시험과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사법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 「통관업법」을 「관세법」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반면, 조사대상 주요 국가 중 일부는 관세사에 관한 사항을 「관세법」 내에 규정하고 있음
 - 미국과 호주는 「관세법」 안에 관세사의 자격 요건, 의무와 책임, 영업허가, 징계 및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프랑스는 「관세사법」에 관세사 업무의 제한, 자격 요건, 의무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나. 직무 범위

- 우리나라는 「관세사법」 제2조에 관세사, 관세법인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통관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통관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음
 - 통관업은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불복청구, 관세사 업무에 대한 자문 등을 포함함
- 반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는 수입자 또는 수출자를 대리하여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기본적 인식 이외에 별도로 법률상에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은 관세법에 ‘통관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은 「통관업법」 제2조에서 통관업무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대리인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서면으로 법적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따라 통관절차의 이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국가도 있음
 - 미국의 경우 수입자를 대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명백히 수권받은 범위 내에서 납부할 수 있음
 - 미국, 호주 및 프랑스를 제외한 주요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업무 대행과 관련한 서면 위임 규정은 없음
- 주요국과 직무 범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직무 내용이 가장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통관업과 관련된 업무 정도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조사대상 국가들은 화물운송주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¹⁰⁹⁾
- 또한 불복청구의 대리, 통관에 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자문

109) 프랑스의 관세사 직무 범위는 관련 규정에 통관업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고, EC 관세법에 따라 대리 유형에 따라 통관 절차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업무는 통관 신고와 직접 연관된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로서 수행되고 있음

〈표 IV-1〉 관세사의 직무범위 국제비교

업무 내용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세번(稅番)·세율의 분류/품목분류	○	○	○	○	○
수입, 수출, 반송의 신고 및 관련 절차 이행	○	○	○	○	○
수출입 물품의 허가·승인·표시 등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	○	○	○
불복청구의 대리	○	○		○	○
수출입신고,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FTA 컨설팅 업무(원산지 결정 등)	○	○	○	○	○
환급청구의 대리	○	○	○	○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 대리(세관의 조사, 처분 관련)	○				
관세법 관련 신고·보고·신청 등과 관련 절차	○	○			
서류보관	○	○	○	○	○
관세 등 제세금 납부	○	○		○	○
물류·운송 주선, 보세화물 관리			○	○	○

다. 자격 취득 방법

1) 자격 요건

- 우리나라는 관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관세사 자격 요건으로 하는 반면, 조사대상 주요 국가는 일정한 나이, 청렴성, 관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자격심사 등 기타 사항을 요건으로 함
 - 미국은 일정 나이 이상의 시민권자로서 도덕성을 갖추고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자격 요건으로 함
 - 호주는 청렴성, 필수과목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 및 업무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캐나다는 관세사 전문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합격 후 국적, 나이, 범죄이력, 자본 상태 등 확인하고 면허를 취득해야 자격이 발생함
 - 일본에서는 통관사 시험에 합격 후 통관업자에 의해 고용되어야만 통관사 자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통관업자는 고용 전 결격사유(나이, 파산 여부, 법률 위반 이력 여부 등 기타) 등을 세관장을 통해 확인함
 - 프랑스는 재무건전성, 관련 업무경력 및 법규 준수도와 관계 법령 위반 내역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함
-
- 특히 호주의 경우는 관세사 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실무경력이 입증되면 관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 또한 미국과 캐나다는 당해 국적의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에 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와 일본은 국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국적과 관계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
- 우리나라는 법규준수도 및 재무건전성 분야를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관세사 자격 취득 요건 및 자격 유지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도 유사한 사항을 결격 사유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및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실행 등의 위법사실이 없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 결격 사유에 대하여 미국과 호주는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개인의 청렴성 및 법인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신원조회 성격의 조사를 수행함
-
- 다만 일본의 경우 통관사 자격이 있어도 통관업을 이행하지 않는 한 통관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관사 자격 결격사유가 아닌 통관업 허가 결격 사유를 두고 있음
 - 결격사유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것과 유사함

2) 자격시험

- 우리나라는 관세사 시험과목과 시험의 난이도가 관세사 실무를 위한 시험보다는 고시에 초점이 맞춰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조사대상 주요 국가는 실무를 위한 지식을 평가함
 - 미국은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객관식 평가로 이루어짐
 - 호주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듯이 기술하는 형식의 평가방식으로 실무지식과 경험 이 다소 요구되는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짐
 - 캐나다는 객관식 평가만 이루어지며 매년 평균 점수는 60점대 수준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일본의 경우 3과목에 대한 단답형 주관식과 객관식 평가로 지식을 평가하며, 60점을 넘으면 합격을 인정함
 - 프랑스는 지식 충족 여부를 관련 업무 경력의 연관성 심사로 대체하며, 별도의 관세사 자격 시험제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우리나라는 관세율표와 같이 방대한 양의 암기 학습이 요구되는 과목의 경우에도 주관식으로 평가하는 반면, 조사대상 주요국가는 관세율표를 지참하게 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음
 - 미국은 품목분류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객관식 문항으로 출제하며 수험자는 해당 관세율표를 소지할 수 있음
 - 호주는 보다 실무에 가깝게 물품의 설명과 상황을 제시하고 품목분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며, 또한 해당 관세율표를 소지할 수 있음
 - 일본은 시험문제와 관련된 부분의 관세율표를 시험 시 별책으로 제공하고 이를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보다 실무형에 가까운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음

- 관세사 시험을 1차 및 2차에 나누어 실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였으며, 따라서 시험 과목이 많고 시험 시간도 상대적으로 긴 편임
 -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의 경우 시험 시간이 3~4시간 정도이나, 우리나라는 총 8시

간(1차: 2시간 40분, 2차: 5시간 20분)에 달해 기타 주요국의 2배 수준임

- 우리나라의 시험과목은 객관식의 1차 과목은 관세법, 내국소비세, 회계학, 무역영어로 하며 2차 과목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로 함
 - 미국의 경우 시험과목은 6과목으로 관세평가, 품목분류, 환급, 수입통관실무, 무역협정, 기타로 함
 - 호주는 공인교육과정의 11과목 가운데 출제하며 전반적인 내용 이외에 수출입 서류작성, 통관실무 자문 등을 포함함
 - 캐나다는 4과목을 테스트하며 과목은 관세법 등의 법률, CBSA 규정(Memoranda), 물품 수출입 관련 규정, 일반적 상관습임
 - 일본은 통관업법, 관세법 등, 통관절차실무 3과목에 대해 평가함

- 특이사항으로 호주는 관세사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가 관세사 자격 취득 요건 가운데 경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관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3) 시험의 일부과목 면제

- 우리나라와 일부 주요국에서는 통관 관련 경력자에 대해 관세사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경력 기간에 따라 3개의 과목 중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음

- 일본은 관청 내에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통관업자의 통관 사무에서 종사한 실무 경력도 관련 경력에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직 공무원으로서의 관련 직무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어, 공무원에게만 제공하는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이함

4) 자격 취득 절차

-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는 관할 기관에 자격 취득 신청절차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관세사 자격이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자격 시험 합격 후 3년 이내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관할 세관에 자격심사를 신청하며, 최대 1년 정도 소요됨
 - 호주 또한 자격 심사의 승인은 희망하는 지역에서의 통관 업무 수행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격 신청에서 승인까지 약 8주 정도 소요됨
 - 캐나다는 CBSA사무소에 신청 후 관할 기관과 LAC의 공동 심사를 통해 승인되며, 총 3개월 정도 소요됨
 - 프랑스는 관할 기관에 개인 또는 법인의 영업 유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거치며, 총 6개월 정도 소요됨

- 자격 심사는 관세사 자격의 법정 요건을 검토하는 목적 이외에도 미국과 호주의 경우는 자격 승인과 함께 통관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의 공동 조사로 이루어짐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별도의 업무경력이나 다른 요건을 검토하는 심사 절차를 요하지 않음

- 특이사항으로 일본은 통관사 자격 시험의 합격과 함께 통관업자에게 고용이 되어야만 통관사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와도 상이한 부분임

라. 등록 및 업무의 개시

1) 관세사 등록 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관세사회에 등록한 자는 통관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주요국은 유사한 목적의 다른 형태의 제도를 두거나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리인으로 지정되는 절차만 요구되기도 함
 - 미국의 지역허가 및 특정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부여되는 전국허가를 통해 통관업을 영위할 수 있음
 - 호주의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관보에 고시된 지역에서 통관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 신청이 부여된 지역에서 관세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대리인으로 지정되어야 함
 - 캐나다는 지역 CBSA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여야 통관업 영위가 가능함
 - 일본에서는 통관업자에 의해 고용이 되어야만 통관사로서 활동할 수 있음
 - 프랑스는 서류보관시설과 사업장별 등기를 마쳐야만 통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 미국과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별도로 관세사 자격을 갖춘 자의 자격 신청을 통해 통관업 수행능력을 심사하고, 통관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음
 - 미국은 원칙적으로 관세사 자격심사를 통해 지역허가를 발급하므로 심사단계에서 통관업의 사업신뢰성, 성격 및 명성에 관한 조사를 거침
 - 호주의 경우 관보에서 고시한 지역에서만 통관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또한 관세사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통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만 영업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면허의 신청 시에 범죄 기록, 책임지고 업무를 행할 정도의 재원을 갖추었는지 등을 심사하며 불충족 시 면허를 허가하지 않음

- 특히 일본은 통관업자에 의해 고용되지 않은 한 통관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이해됨
 - 통관사 시험에 합격한 자 중 통관업자에 의해 고용되는 자만을 통관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통관사는 고용되기 전 세관장을 통해 결격사유 등 여부를 확인
받음

- 통관업자에 의해 고용되었던 통관사가 퇴직할 경우 통관사 자격을 잃음

2) 수습제도

- 우리나라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통관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의 실무수습을 거쳐 관세사 등록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으나, 주요국가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두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실무수습의 목적은 이론교육 및 실무교육과 이에 따른 평가절차를 거쳐 실제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에 있음

마. 의무와 책임

1) 의무와 책임

- 우리나라 관세사는 통관 자료의 보관(5년), 서비스에 대한 기밀유지의무, 명의대여 및 권력남용 금지 등 직업윤리를 가지고 통관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주요국 또한 이러한 사항을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만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공무원 점입 및 영리 사업 종사 금지, 직무상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임
 - 호주 또한 CBFA 규정에서 관세사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가입자, 가입 기간, 가입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임
- 특이 사항으로 미국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전직 미국 정부기관 공무원과의 결탁을 금지하는 의무를 관세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출신 관세사를 고용한 고객과의 거래 또한 금지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은 변호사와의 금전거래, 관세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통관업무 수행, 관세사 자격에 대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어 통관업 수행에 대한 청렴의무를 다소 엄격하게 강제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본인이 관세당국에 제출한 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안 경우 자발적으로 관세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추가하여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고객의 관세추징 및 불법 물품의 소비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2012년 7월에 관세사 자격 유지조건으로 추가함
- 미국과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자격의 유효기간인 3년을 주기로 자격을 부여한 관세당국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이는 관세사 자격 발급신청과 함께 지역 단위의 관세당국에게 실제로 영업활동을 영위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임
- 캐나다의 경우 관세사로서 행한 금전적 거래에 대한 회계장부를 6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부정행위와 사기·세금포탈 및 이에 대한 시도 적발 시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함
- 일본은 서류 및 장부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통관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 통관사의 명의 대여나 통관사 사칭 행위 시 벌금형에 처함
- 프랑스는 자격 요건이 미비되거나, 인적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및 관세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 관세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2) 관세사 자격 취득 이후 전문교육

- 우리나라와 호주만 관세사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재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관세사회에서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이는 등록 관세사에 한하여 관

세사 자격 유지 조건 가운데 하나임

- 호주의 경우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관세사의 재교육 요건을 2012년 7월 신설하였으며, 매년 10시간 이수요건을 위반한 경우 자격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다만 호주의 경우 재교육 이수 내역을 CEO에 인증받아야 하며, 경영 및 인력관리 등의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

바. 관세사회의 기능과 역할

- 우리나라를 포함한 조사대상 주요 국가는 모두 국제관세사연맹(IFCBA)의 회원국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시아-오세아니아 관세사회 연맹(FAOCBA) 가입국이기도 함
 -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뉴질랜드는 1990년 공식 출범한 IFCBA의 최초 회원국이었으며, 현재는 23개국에 가입되어 있음

- 각 국가별로 관세사회의 기능과 역할이 상이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사회에서 관세사 시험 합격자가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업계를 대변하기 위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강하며, 교육 및 통관업무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세분화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관세사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관세당국과 업계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적극적임
 - 캐나다에서는 관세사의 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지역세관 및 허가자문위원회에서 담당하므로 관세사협회는 관세사의 허가와 무관함
 - 일본에서는 통관사가 통관업자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시작하기 전 세관장에게 확인을 받는 절차가 있을 뿐, 일본통관사연합회는 관련 권한이 없음
 - 프랑스의 경우 관세사 관련 기능은 미미하며, 운송, 물류기업의 대외적 활동을 통해 이익 보호와 국제 사회의 변화에 맞춰 관현 산업의 진보를 도모하고자 함임

- 각 주요국별 관세사회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음

- 미국과 호주는 관세사뿐만 아니라 관세사와 운송업자가 주체가 되는 협회를 운영하고 있음
- 캐나다 관세사협회에서는 관세사와는 별도의 무역·통상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의 통관사연합회에서는 통관사 시험 합격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이 특이 사항임

〈표 IV-2〉 관세사 관련 제도 국제비교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프랑스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사법/시행령/시행규칙 - 관세사 직무수행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19USC 1641) - 관세규정 (19CFR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제11부 - 관세규정 157~162B - 관세청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morandum D1-8-1 - Memorandum D1-8-3 - Customs Brokers Licensing Regul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업법/시행령/시행규칙/기본통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제4부 - Decree of 22
관세사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사 시험 합격 -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 이상 - 시민권자 - 도덕성을 갖춘 자 - 관세사 시험 합격 - 자격심사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성 또는 적정성 - 교육 이수 - 자격시험 합격 또는 통관 경력 증명 - 자격심사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사 시험 합격 -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자 - 원만한 성품 소유자 - 18세 이상 - 충분한 재원 보유 - 자격심사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사 시험에 합격한 자 - 통관업자에 의해 고용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준수도 - 업무경력 - 재무건전성 - 자격심사 승인

〈표 IV-2〉의 계속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프랑스
영업 유형	- 개인관세사무소 - 합동관세사무소 - 관세법인 - 통관취급법인등	- 개인(individual) - 법인(corporation) - 단체(association) - 조합(partnership)	- 개인사무소 (a sole trader) - 법인(company or partnership)	- 개인(individual) - 조합(partnership) - 법인(corporation)	- 통관업자 (통관사 고용) - 피고용 (통관업자에게 고용 되어야 함)	- 개인 - 법인 - 보관서류 구비요건 증명 - 상업등기 및 전문직업인 납세자 등록
업무 개시 요건	등록	- (관세사 자격 취득과 함께 지역허가가 발급)	- (관세사 자격 취득과 함께 영업자격을 주어짐)	면허		
관세사 등록 (허가·면허) 비용	- 관세사회 임회비 - 지부 임회비 (총 약 500~650만원)	- 신청처리수수료 100US달러 (약 107,697원) ¹⁾ - 연간 영업허가 사용수수료 138US달러 (약 148,622원)	- 1,200호주달러 (약 1,352,016원) - 단, 통관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120호주달러 (약 135,202원)	- 매년 600캐나다달러 (약 652,734원) - 최초 등록 시 50,000캐나다달러 담보금 필요 (약 54,394,500원)	-	-
명칭	한국관세사회 (KCBA)	미국관세사·운송 업자협회 (NCBFAA)	호주관세사·운송 업자협회 (CBFCA)	캐나다관세사협회 (CSCB)	일본통관업연합회 (JCBA)	프랑스 운송·물류연합(TL F)
관 세 사 회	IFCBA	○	○	○	○	×
	가입여부					
	관세사등 록·허가 업무	○	×	×	×	×
	관세사시 험교육	×	×	○	○	×
시험문제 출제권한	×	×	○	×	×	

〈표 IV-2〉의 계속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프랑스
관련 위원회	- 관세사자격심의 위원회 - 관세사징계위원회	-	- 관세사자격자문 위원회	- 면허자문위원회 (LAC)	- 시험위원 - 심사위원	(2009년 폐지)
징계 종류	- 등록 취소 - 업무정지 (1년 이내) - 업무일부 정지(6개월 내) - 견책	- 취소 - 정지(벌금형 대체 가능) - 철회(벌금형 대체 가능)	- 취소 - 정지 - 일정기간 정지 - 견책	- 면허 정지 - 면허 취소	통관업자 - 허가 취소 - 업무 정지 (1년 이내) 통관사 - 업무 정지 (1년 이내) - 업무 금지 (2년 이내)	- 정지 - 취소
등록(허가·면허) 취소 사유	- 결격사유에 해당 - 폐업 또는 사망 - 업무정지명령 위반 등	- 결격사유에 해당 - 폐업 또는 사망	- 결격사유에 해당 - 무결성 조사 거부 - 오류정보 - 자진신고 위반 - 자격 남용 - CPD 이수요건 위반	- 관련 규정의 위반 - 사기(fraud) 또는 사기 시도 - 관세 포탈 또는 포탈 시도 등	- 결격사유에 해당 - 부정행 방범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 등	- 자격요건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관세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주: 1) 환율은 2012년 2월 월평균 최초 고시 매매기준환율임

〈표 IV-3〉 관세사 시험제도 국제비교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시험 응시자격	-	-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연방정부 공무원이 아닌 자	-청렴성 및 적정성 요건 -공인교육이수	-	-	
시험과목	1차	- 내국소비세법 - 관세법개론, FTA특례법 - 회계학 - 무역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개 공인교육과정 과목 -수출입 서류 작성 -통관 절차 -요건확인 -특혜관세 적용 -검역허가 -수입통관 실무 -관세평가 -품목분류 -품목분류 심화 -관세평가 심화 -통관실무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관업법 -관세법, 관세징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등 -통관 절차 실무 (예외적으로 통관업자로서 또는 관청에서의 관련업무 경력자 1 또는 2과목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법, 관세율표, 소비세법, 특별 수입 절차법 -CBSA 규정, 정책, 절차 -타 정부부처를 대신하여 CBSA가 관리하는 물품 수출입 관련 규정 -일반적인 상관습 	
	2차	- 관세법, 환금특례법 - 관세율표 및 상품화 - 관세평가 -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분류 -환급 -수입통관 -기타 -무역협정 -관세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관식 10문항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관식 및 단답형 주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지선다형 객관식
	(예외적으로 관련분야 경력 공무원에 1차 전과목, 또는 1차 전과목과 2차 2과목면제)	-1차: 5지선다형 객관식 -2차: 논술형 주관식	-5지선다형 80문항	- 주관식 10문항 내외	- 객관식 및 단답형 주관식	- 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 시간	총 8시간 (1차: 2시간 40분, 2차: 5시간 20분)	총 4시간	총 3.5시간	총 4시간	총 3시간	
합격기준	전과목 40점이상 평균60점이상	75%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이상	
주관	관세청(출세, 관리, 채점) 산업인력공단(접수, 합격자발표)	미국 관세청 (CBP Headquarters)	호주관세사회	재무성	규경서비스청(CBSA)	
실시 횟수	1·2차 각 년 1회	연 2회	연 2회	년 1회	년 1회	

주: 프랑스는 관세사 시험 제도를 운영하지 않음

2. 시사점

가. 관세사 직무

1) 수출관련 직무 역량 강화

- 관세사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관세탈루 및 불법 물품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통관오류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수입자를 대리하거나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수 손실의 위험뿐만 아니라 물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AEO 제도를 통하여 수출입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에게 통관절차의 혜택을 부여하고 나아가 국가 간 상호인정을 통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 미국 9·11테러 이후 전략물자 및 관련 기술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직접 수출 및 간접수출을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관세사의 직무는 물품의 수출입통관에서 FTA 체결, AEO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특혜제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수출위주의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FTA의 특혜관세 적용보다 수출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원산지판정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AEO 제도는 관세심사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수출입 안전관리 이외에도 기존의 법규 준수도를 강화하는 역량이 동시에 요구됨
- 조사대상 주요국가의 직무 범위는 관계법령에 상세하게 명시되지 않아, 관행상 통관대리인으로서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관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IFCBA에서는 관세사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유일한 대리인 자격으로 관세당국

과 통관 업무를 대행할 것을 권고함

- 물류 보안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수출입 통관 대행뿐만 아니라 관세당국의 인증을 받은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임
 - 관세당국과의 수출입거래의 대리인으로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사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지식을 갖추어야 함

□ 따라서 AEO 공인업체의 수입 부문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수출 부문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물류 부문 강화 사업과 함께 물류 전문가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일부 주요국은 관세사의 직무에 물류·운송 주선 또는 보세화물 관리를 포함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보조금 지원, 재정지원, 컨설팅 및 인증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통하여 전문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음
 -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및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FTA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과 함께 관세사의 자문 요구가 증가한 것을 참고할 수 있음

□ 이외에도 아직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지 않는 영역이지만 관련 법규 위반 시 수출금지에 상당하는 중대한 위험이 따르는 분야인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직무를 발굴해야 할 것임

- 미국의 경우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컨설팅이 관세사 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전략물자 자율준수 프로그램¹¹⁰⁾을 AEO 제도처럼 등급별로 운영하는 방법 또는 공급망 당사자로서 관세법인을 자율준수 인증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물류 보안체계를 구상해볼 수 있음

110) 전략물자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내부통제 등 일정 기준을 갖추고 지속·반복적으로 수출하는 수출자에게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2) 직무 책임 강화

- 관세사의 직무는 정확한 통관 절차 이행을 통하여 관세 수익을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수출 관련 위험을 관리하도록 돕는 역할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권한을 위임한 수입자 또는 수출자는 이러한 관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수입자 본인의 위험으로 귀결될 수 있음
 - 실제로 품목분류 서비스 분야가 이의 대표적인 사례임
- 따라서 직무를 성실하고 신중하게 이행하도록 직무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함
- 조사대상 주요국 가운데 미국과 호주는 이러한 맥락에서 관세사 자격시험을 합격한 자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거치며, 자격 취득 요건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사 등록 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2013년부터 호주에서는 관세사의 새로운 자격 유지 조건으로 본인이 관세당국에 제출한 정보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중대성을 판단하여 자진하여 수정할 의무를 추가하였음
 - 관세사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임
- 우리나라는 양별규정을 수입자 및 수출자에게만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가 관세사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호주의 제도를 고려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나. 자격 요건

- 우리나라의 관세사 자격은 별도의 교육이나 업무경력은 요구하지 않고 단지 자격 시험 합격여부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기존의 관세사 업무가 수입신고 대행이었던 반면, FTA 컨설팅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세사 자격 시험 과목을 개편한 바 있음
 - 미국 및 EU와 같은 거대 경제권 국가들과의 FTA 체결로 인해 관세사의 FTA 원산지 판정 컨설팅 능력이 요구됨
 - 관세사 시험의 1차 과목에 회계원리를, 2차 과목에 FTA 특례법을 편입시켰음
- 자격 시험이 통관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게 개선되었지만, 다른 주요국 사례와 같이 관세사 자격 요건으로 관련 업무경력을 평가하거나 요구하는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호주의 경우 종전 회계학을 필수과목 가운데 하나로, 경제학 및 수학을 선택과목 중 하나로 이수할 것을 교육자격 요건으로 운영한 바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현재 관세 통관 실무에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관련 업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태리의 경우 2년 이상, 호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 IFCBA와 WTO에서 권고하는¹¹¹⁾ 관세사 자격의 신청 조건은 일반적으로 3년 내지 5년의 통관 대행업무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이외에도 당해 관세법령의 적용 구역에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일정 나이 이상일 것,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는 자로서 수출입에 관한 심각한 법규 위반사항이 없어야 할 것을 권고함

111) IFCBA, Best practices model for the licensing of customs brokers, 2009. 10., WTO, Draft consolidated negotiating text, Negotiating Group on Trade Facilitation, 2009. 12.

– 관세사 자격 시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를 이행한 자에 대한 결격사유 검증 절차를 요구하고 있음

- 특히 일부 주요국은 자격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관련 업무 경력 또는 통관업무를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업무경력이 이에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과정을 면제해주기도 함
 - 또한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업무경력의 전문성과 지식 습득정도를 입증하여야 하며, 시험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실무경력과 지식에 대한 심층 인터뷰로 대체 가능함
 - 일본의 경우 통관업을 영위하거나 통관업자에 의해 고용되지 않으면 통관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 따라서 자격 시험 합격 여부 이외에도 통관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 또는 업무 경력을 관세사 자격 요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다. 시험 제도의 개선

1) 시험과목

- 현재 우리나라 관세사 시험의 과목에는 회계학, 상품학, 무역영어 등 실무와 다소 거리가 있는 이론적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자격증 취득 후 실질적으로 이행하게 될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음
- 특히 무역영어 과목의 경우, 신용장 통일규칙이나 비엔나 협약 등 각종 국제무역 규칙과 운송·보험 관련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암기를 요하는 경우가 많고 수험자의 실질적인 영어 능력 평가에 한계가 있음
 - 여러 국제무역규칙은 2차 과목인 무역실무 과목에서도 다루어지는 내용이므로 본

과목과 중복된다는 문제도 있음

- 통관 실무에서는 사실상 영어의 사용 빈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며, 사용되는 영어도 국제무역규칙에 관한 내용과는 거리가 있음
 - 실제로는 수출입 업체의 거래 및 계약 관련 영문 서류, 외국인 고객(해외 수출자, 국내 외국계 기업 등)을 위한 영문 자료 등의 작성 시 영어 능력이 필요함
- 따라서 좀 더 실무와 연관된 영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2차 과목 중 하나인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 중 상품학은 상품의 생산과 품질, 소비 등에 대한 학문으로 관세사의 실제 업무에 비추어 보았을 때 관세율표에 비해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음
- 그리고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에서 관세율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상품학을 시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2) 이론식 시험 지양

- 주관식 시험인 2차 시험은 문제당 많은 분량의 내용을 기술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암기가 요구되는데, 특히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의 경우 관세율표 상 품목 코드(HS)를 4단위 내지 6단위까지 암기하여야 하는 등 절대적인 암기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음
- 실무에서는 관세율표의 단순 암기보다는, 해당 품목의 성상을 이해하여 국제적인 규정 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절히 수행하여 세율을 판단(예: 특혜관세 적용 여부 등)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보다 요구됨
 - 일반적으로 품목분류 시에는 관세율표 편람이나 인터넷 관세율표를 참고하여 업무를 이행하고 있음

- 따라서 지나친 이론식·암기식 테스트에서 벗어나 실무 상황에 맞게 상황을 제시한 후, 적합한 품목분류 코드를 찾아 분류하도록 시험 문제 형태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주요국에서 관세사 시험 시 관세율표를 지참하게 하거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의 관세율표를 시험장에서 직접 제공하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3) 민간 실무 경력자 우대

-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경력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일반 전형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여 보다 간소화된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특정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함
 -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함
 - － 관세행정 분야¹¹²⁾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특정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특정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업무 경력을 인정하여 자격 시험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통관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민간에서의 실무 경력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현재는 공무원 출신의 실무경력자들만 비교적 용이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주요국 가운데 일본 또한 통관 관련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통관업자의 실무경력과 관청에서의 사무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음

112) 관세청의 감사관실,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등으로 함

-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등에서 축적한 관련 업무 경력을 일부 인정하는 방안 또는 이런 실무경험이 해당 시험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관세사 시험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우리나라는 관련 실무경력을 인정해주고자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관세사 시험 유형이 실무 경력을 평가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와 어긋남
 - 2차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방법 또는 1차 시험과목을 면제하고 2차 시험을 객관식으로 출제하는 형태임

- 다른 나라의 경우 실무를 평가하는 내용의 시험 과목을 면제함으로써 통관 관련 업무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통관 관련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법률과목과 통관 실무 2과목을 면제하며, 5년 이상인 경우 통관 실무 1과목을 면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자격 시험이 매우 실무적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 경력을 평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는 자격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우선 시험을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편한 후에, 민간 통관 업무 경력 수준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 업무 경력의 시험 면제 자격 여부는 세관에서 경력기술서 등 제출한 서류로 판단하며, 기계적인 사무 경력은 배제함
 - 호주의 경우는 서류심사 및 NCBLAC에서 주관하는 인터뷰를 거치는 경력 평가 과정을 거치고 있음

- 통관 관련 부서의 업무 경력을 부서와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마찬가지로 민간 실무 경력 또한 관리자의 추천서, 직무 내용과 근무 연수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라. 지속적 재교육 실시

- 우리나라는 관세사 시험의 합격만으로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있으므로, 시험 합격 사실 외 전문성 보유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 통관서비스를 전문자격을 갖춘 제3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통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함

- IFCBA는 이미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국가공인 전문가 수준의 업무 실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관세사회, 제3교육기관, 기업 실무 훈련, 비공식 실무 수습 등을 통하여 관세사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받아야 함
 - 관세사는 지속적으로 재무건전성과 법규준수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관세사 자격의 정지와 취소에 대하여 불복청구 기회가 주어져야 함

- 관세사회에서는 ‘보수교육’이라는 명칭으로 매년 1회 관세사에 대한 의무적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마저도 등록 관세사에 한정된 것이어서 미등록 관세사는 재교육의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실정임
 - 관세법인 등에 고용되어 업무를 행하는 관세사 중 이사가 아닌 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관세사가 다수임

- 전문 자격사업에도 사실상 스스로 전문성을 강화시키려는 노력 이외에는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음

- 따라서 적절한 교육의 실시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는 관세사 스스로의 발전과 의뢰인인 수출입 업체에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나아가 세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관세사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관세사와 직무보조자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 관세사회에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관세사들을 교육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호주의 경우에는 호주 내 모든 관세사(영업 여부 불문)에 대해 매년 10시간 이상의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교육의 수료 사실을 관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곽병기, 『관세사제도에 관한 연구(요약)』, 한국관세학회 학술발표대회, 1999. 12
- 관세청, 『일본통관제도해설』, 2004
- 김재식, 『관세사 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0년 춘계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2000. 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관환경변화에 따른 관세사의 책임과 역할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2002. 2
- 박호신, 『관세사 실무수습제도의 개선방안』, 2000년 춘계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2000. 6
- 성남길, 『전략적 제후를 통한 통관업체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2009. 2
- 송선욱, 「미·일 관세사제도 비교분석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관세학회지』 제6권 제3호, 2005
- 이강화, 『관세사 업무영역 확대방안』, 2000년 춘계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2000. 6
- 정성호·김태인, 「관세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관세업무 리스크 관리」, 『수출보험학회지』, 2006. 12
-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Risk management in the Processing of Sea and Air Cargo Imports, Audit Report No.15 2011-2012
- EU, The impact of the customs representation on the EU's competitiveness and security, Explanatory memorandum, 2007. 5
- Roberto Bergami, The National Customs Brokers Course: An E-learning Model, 2009. 7
- WCO, World Customs Journal, Volume 4, Number 1, 2010. 3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www.customs.go.kr/foreign

국제관세사연맹, <http://www.ifcba.org/>

미국 관세청-trade-trade programs-broker compliance, <http://www.cbp.gov/>

미국 관세사회, <http://www.ncbfaa.org/>

일본 관세청, www.customs.co.jp

일본통관업연합회, www.tsukangyo.or.jp

일본 통관사 시험 가이드, <http://2kansi.com>

캐나다 관세청, www.cbsa-asfc.gc.ca

캐나다 관세사회, <http://cscb.ca>

프랑스 관세청, <http://www.douane.gouv.fr/default.asp>

프랑스 운송 · 물류연합, <http://www.e-tlf.com/accueil.htm>

호주 관세청-import Export-Licensing-Broker, <http://www.customs.gov.au/default.asp>

호주 관세사회, <http://www.cbfa.com.au/Default.aspx>

부록. 주요국의 관련 서식

부록 1 우리나라 관세사 등록신청서

신청번호 제 호		처리기간	
관 세 사 등 록 신 청 서		3일	
① 성 명	(한 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생 년 월 일		
④ 주 소		전 화	
⑤ 사무소소재지		전 화	
⑥ 자격증번호	⑦ 자격취득구분		
<p>관세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의 등록을 신청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관세사회장 귀하</p>			
첨부서류: 없음		수 수 료	
		없 음	

부록 2 우리나라 관세법인 등록·등록갱신 신청서

(앞 쪽)

제 호		<input type="checkbox"/> 등 록 <input type="checkbox"/> 등록갱신		신청서		처리기간
관세법인				7일		
				수수료 없음		
법인의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소재지						
관세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	자격증번호	제 호	관세사등록번호	제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세사	자택 주소			관할 세관		
	자격증번호	제 호	관세사등록번호	제 호		
관세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	자격증번호	제 호	관세사등록번호	제 호		
	재산상황					
등록(갱신)기간						
위와 같이 「관세사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관세사법」 제17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5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관 세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1. 정관사본 2. 소속된 관세사의 관세사 등록증 사본 3.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5. 사무소별 관세사 등의 근무현황 7. 법인의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직인)						
※ 관세사가 많아서 위 관세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뒤쪽에 이어서 적으십시오.						

(뒤 쪽)

관 세 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관할 세관	
	자격증번호	제 호	관세사등록번호	제 호	
관 세 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관할 세관	
	자격증번호	제 호	관세사등록번호	제 호	
관 세 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관할 세관	
	자격증번호	제 호	관세사등록번호	제 호	
관 세 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관할 세관	
	자격증번호	제 호	관세사등록번호	제 호	
관 세 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관할 세관	
	자격증번호	제 호	관세사등록번호	제 호	
관 세 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관할 세관	
	자격증번호	제 호	관세사등록번호	제 호	

부록 3 우리나라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서

(앞 쪽)

제 호		처리기간	
통관취급법인등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등록갱신 신청서		7일	
		수수료 없음	
명 칭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사 소재지			
통관업 사무소 소재지			
관세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관할 세관	
	자격증번호	제 호	관세사등록번호 제 호
관세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관할 세관	
	자격증번호	제 호	관세사등록번호 제 호
재산상황(자본금 및 시설·장비 포함)			
등록(갱신)기간			
등록 조건	(운송·보관·하역)을 위탁 받아 이행하는 물품에 한정하여 통관 업무를 행할 것		
<p>위와 같이 「관세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통관업의 등록(「관세사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통관업의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관 세 청 장 귀하</p>			
<p>첨부서류: 운송업·보관업·하역업의 등록증 사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법인에 출자한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의 등록증 등의 사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업체의 경우에는 입주허가서 사본) 또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서 사본</p>			
<p>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관 세 청 장 (직인)</p>			
※ 관세사가 많아서 위 관세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뒤쪽에 이어서 적으십시오.			

부록 6 우리나라 관세사 자격증 양식

제 호	
자 격 증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관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관세청장 인	

22227-11711일
96.6.17 제정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부록 7 미국 관세사 정기 보고서 권고 양식

CUSTOMS BROKER TRIENNIAL STATUS REPORT

In accordance with 19 C.F.R. § 111.30(d), each entity holding a broker's license must file a report during February 2012 with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and pay a processing fee of \$100. A separate report and fee for each license must be addressed to the Port that originally issued the license. A Triennial Status Report which is not correctly filed with the Port that originally issued the license will be rejected by CBP. Any license for which no report and fee is filed is subject to suspension by operation of law. Your cancelled check is evidence of that the fee was paid. Make checks payable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Name: _____ <small>Please PRINT or type your name as it appears on your license</small>		
Mailing Address: _____ <small>Street / P.O. Box</small>		

<small>City, State and Zip Code</small>		
Phone Number: _____	Internet/e-mail address _____	
License number _____	Issue Date _____	Issuing Port _____

Type of License: (Circle appropriate answer) **Individual Corporation Association Partnership**

If you circled Individual, are you currently a **Federal Employee**? _____

If you circled Corporation, Association or Partnership, please identify the license qualifier:

Name: _____ **License number:** _____

Are you actively engaged in Customs business? _____ If yes, and applicable, submit a list of employees. (19 C.F.R. § 111.28(b)(1)(i))

Circle one of the following: I am the **sole proprietor** or **an employee** of:

Name of Brokerage _____

Address _____

Have you engaged in any conduct that could constitute grounds for suspension or revocation of your license as described in 19 C.F.R. § 111.53 (i.e., conviction of a felony or misdemeanor)? _____


If yes, please submit details.

I, _____ certify that the statements contained in this report and supporting attachments (e.g., employee lists, if applicable)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Signature of licensee _____ **Date** _____

Warning: Any misstatement of pertinent facts identified in the Status Report constitutes grounds for revocation or suspension of the license.

부록 8 호주 관세사자격 신청 양식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h2 style="margin: 0;">Application for Customs Broker Licence</h2>	
<p>We require this information under section 183CA of the <i>Customs Act 1901</i> and regulation 157 of the <i>Customs Regulations</i> in order to consider your application for a customs broker's licence.</p>			
APPLICANT DETAILS			
Given Names		Family Name	
Home Address			
Suburb		State	Postcode
Postal Address			
Suburb		State	Postcode
Occupation	Telephone No. (BH)		Mobile No.
Email address			Date of Birth / /
HAVE YOU PREVIOUSLY APPLIED FOR A CUSTOMS BROKERS LICENC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DO YOU AGREE TO HAVE YOUR NAME AND LICENCE NUMBER APPEAR ON THE CUSTOMS INTERNET LISTING OF LICENSED BROKERS?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NAME AND ADDRESS OF EMPLOYER			
Name		Telephone No.	
Address			
Suburb		State	Postcode
EDUCATIONAL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Educational Qualifications			
Relevant Experience (<i>Duties, period of service, etc.</i>)			
<i>Attach list if insufficient space</i>			
Names and Period of Employment of Previous Employers			
<i>Attach list if insufficient space</i>			
Specify the place(s) where you propose to act as a Customs Broker <i>"All places in the Commonwealth"</i>			
DO YOU INTEND TO ACT AS A CUSTOMS BROKER IN YOUR OWN RIGHT FOR OWNERS OF GOODS FOR THE PURPOSES OF THE CUSTOMS ACT?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 PLEASE PROVIDE ABN: _____			
DECLARATION			
Under Section 183CA of the <i>Customs Act 1901</i> , I hereby apply for the grant of a licence to act as a Customs Broker.			
I declare that the statements made above are true and correct.			
Signature _____		Date / /	

부록 9 호주 법인관세사자격 신청 양식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h2 style="margin: 0;">Application for Corporate Customs Broker Licence</h2>
<p>We require this information under section 183CA of the <i>Customs Act 1901</i> in order to consider the company/partnership application for a corporate customs broker licence.</p>		
APPLICANT DETAILS		
Name of company or partnership and trading name if applicable		
ABN		
Business Address		
	State	Post code
Postal Address		
	State	Post code
Name of Company Representative who may be contacted	Telephone (BH)	
Email Address	Mobile	
Specify the place or places at which it is intended to act as a customs broker <i>"All places in the Commonwealth"</i>		
NOMINEES NOTE: If insufficient space, please list additional nominees on an attachment in the same format		
Full name	Broker Licence No	
Position within company or partnership	Place(s) at which valid <i>"All places in the Commonwealth"</i>	
Consent I consent to being a nominee of the applicant for the licence indicated above. I am aware of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nominees under Section 183CD of the <i>Customs Act 1901</i> . Signature: _____ Date: ____ / ____ / ____		
Full name	Broker Licence No	
Position within company or partnership	Place(s) at which valid <i>"All places in the Commonwealth"</i>	
Consent I consent to being a nominee of the applicant for the licence indicated above. I am aware of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nominees under Section 183CD of the <i>Customs Act 1901</i> . Signature: _____ Date: ____ / ____ / ____		
Full name	Broker Licence No	
Position within company or partnership	Place(s) at which valid <i>"All places in the Commonwealth"</i>	
Consent I consent to being a nominee of the applicant for the licence indicated above. I am aware of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nominees under Section 183CD of the <i>Customs Act 1901</i> . Signature: _____ Date: ____ / ____ / ____		
Full name	Broker Licence No	
Position within company or partnership	Place(s) at which valid <i>"All places in the Commonwealth"</i>	
Consent I consent to being a nominee of the applicant for the licence indicated above. I am aware of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nominees under Section 183CD of the <i>Customs Act 1901</i> . Signature: _____ Date: ____ / ____ / ____		

부록 10 호주 법인관세사자격 신청 양식(계속)

COMPANY DIRECTORS or PERSONS OF AUTHORITY			
Please list particulars of all company directors and persons having authority to direct the nominees of the proposed company or partnership for the purposes of the <i>Customs Act 1901</i> .			
Surname	Given Name/s		
Date of Birth	Position in Company		
Address	State	Post code	
Surname	Given Name/s		
Date of Birth	Position in Company		
Address	State	Post code	
Surname	Given Name/s		
Date of Birth	Position in Company		
Address	State	Post code	
Surname	Given Name/s		
Date of Birth	Position in Company		
Address	State	Post code	
Surname	Given Name/s		
Date of Birth	Position in Company		
Address	State	Post code	
Surname	Given Name/s		
Date of Birth	Position in Company		
Address	State	Post code	

HAS THIS COMPANY PREVIOUSLY APPLIED FOR A CUSTOMS BROKERS LICENC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DO YOU AGREE TO DETAILS OF THE COMPANY APPEARING ON THE CUSTOMS INTERNET LISTING OF LICENSED BROKERS?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DECLARATION	
Under section 183CA of the <i>Customs Act 1901</i> , application is hereby made for the grant of a licence to act as a Customs Broker.	
Each of the nominees proposed in this application is authorised to act on behalf of the above named company/ partnership for the purposes of the <i>Customs Act 1901</i> .	
COMPANY DECLARATION	
This application is made and 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y's constitution.	
Signature: _____	Office held: _____ Date: ____ / ____ / ____
Signature: _____	Office held: _____ Date: ____ / ____ / ____
PARTNERSHIP DECLARATION	
This application is made by the partners whose signatures appear below	
Signature: _____	Date: ____ / ____ / ____
Signature: _____	Date: ____ / ____ / ____
Signature: _____	Date: ____ / ____ / ____
Signature: _____	Date: ____ / ____ / ____

Page 2 of 2 B1086 (JUNE 2009)

부록 11 호주 관세사 자격증 양식

CUSTOMS BROKER LICENCE

LICENCE No: <LICENCE NUMBER>

Pursuant to Part XI of the *Customs Act 1901* (the Act) and subject to the Act and the regulations being in force under the Act and to the attached conditions, I hereby licence:

<ABN/CCID>
<NAME>

The licence shall commence on <START DATE>

The licence shall expire on <FINISH DATE>

The licence shall expire on the above date unless renew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183CJ of the *Customs Act 1901*.

The licence is valid for all places in the Commonwealth.


Delegate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Dated <PRINT DATE>

부록 12 캐나다 관세사 허가 신청서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Agence des services frontaliers du Canada	APPLICATION FOR A CUSTOMS BROKERS LICENCE DEMANDE D'AGRÈMENT DE COURTIER EN DOUANE	PROTECTED PROTÉGÉ A when completed une fois rempli
<p><small>NOTE: The information on this form is collected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a record of applications and is protect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ivacy Act. The form is stored in personal information bank, Applications for Customs Brokers Licence record # RCC PPU 025.</small></p> <p><small>NOTA: Les renseignements que contient ce formulaire sont recueillis dans le but de tenir un dossier des demandes et sont protégés par les dispositions de la Loi sur la protection des renseignements personnels. Le formulaire est conservé dans le fichier de renseignements personnels concernant les demandes de licence de courtier en douane # RCC PPU 025.</small></p>		
This form is to be completed by the qualified officer – Ce formulaire doit être rempli par le Dirigeant qualifié		
This application is for a licence to transact business at: Cette demande est pour une licence afin de faire des affaires à :		Customs Office Code(s) - Code(s) du bureau de douane
Reason for filing this application: Raison d'enregistrer cette demande:		<input type="checkbox"/> New licence Nouvelle demande d'agrément
Name in which business will be transacted - Nom sous lequel les transactions seront effectuées		<input type="checkbox"/> Additional location Emplacement supplémentaire
Legal name if different from above - Nom légal si différent de ce qui a été indiqué ci-haut		Business Number - Numéro d'entreprise
Street address of brokerage office - Adresse rurale du bureau de courtage		E-Mail address - Adresse courriel
Have you attached the required \$50,000 security? - Avez-vous ci-joint la garantie de 50 000\$ requise?		<input type="checkbox"/> Yes Oui
Please indicate if your company is: Veuillez indiquer si votre société est:		<input type="checkbox"/> Sole proprietorship Entreprise à propriétaire unique
<input type="checkbox"/> Partnership Société en nom collectif		<input type="checkbox"/> Corporation (if a corporation, attach appropriate incorporation documents) Société commerciale (S une société commerciale, veuillez fournir les documents de constitution et sociétés)
<p><small>* Please indicate below all directors and partners (given name, initials, surname) (attach L60 questionnaires) - Attach an additional page if required</small></p> <p><small>* S'il-vous-plait, indiquer tous les administrateurs et tous les associés (prénom, initiales, nom de famille) (joindre formulaire L60) - Veuillez joindre une page additionnelle au besoin.</small></p>		
1.	5.	
2.	6.	
3.	7.	
4.	8.	
Name of qualified officer, individual or partner - Nom du dirigeant qualifié, personne ou associé		Date of qualification - Date de qualification
Business address of qualified officer - Adresse d'affaires du dirigeant qualifié		Telephone number - Numéro de téléphone ()
		Facsimile number - Numéro de télécopieur ()
Declaration by the qualified officer - Déclaration par le dirigeant qualifié		
<p>I declare tha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the information given in this application is true. I make this declaration knowing it is of the same importance as if made under oath and by virtue of The Canada Customs Act. I agree to advise the chief officer of customs of any change in ownership, partners, directors or qualified officers as well as change to the name, address and anything affecting the licence if granted. I hereby authorized the CBSA to consult with bankers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regarding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applicant, and I undertake to provide the Agency with a copy of a business opening statement or of the most recent audited profit and loss financial statement and balance sheet when deemed necessary by the CBSA to support this application for a customs broker licence. I will fulfil all the duties and obligations of a custom's broker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Act and the Regulations established by it. I hereby authorized the release, by the custodian thereof, of any information required by the CBSA, that is necessary in the determination of my suitability to become a licensed customs broker.</p> <p>Je déclare que les renseignements que contient la présente demande sont, à ma connaissance, véridiques. Je fais cette déclaration sachant qu'elle a la même importance que si elle était faite sous serment en vertu de la Loi sur le greffier en douane. J'accepte d'aviser l'agent en chef des douanes de tout changement de propriétaire, d'associés, d'administrateurs ou de dirigeants qualifiés ainsi que de nom, d'adresse et tout autre changement influant sur la validité d'un agrément. Par la présente, j'autorise l'ASFC de consulter des banquiers et des institutions financières au sujet de la situation financière du demandeur, et, lorsque juger nécessaire par l'ASFC afin d'appuyer la demande pour un agrément de courtier en douane, je m'engage à fournir à l'Agence soit une copie de la déclaration d'ouverture d'affaires, soit la plus récente vérifié de profits et de pertes d'états financiers ainsi que le bilan. Je m'engage à satisfaire à toutes les responsabilités et à tous les engagements d'un courtier en douane d'après la Loi sur les douanes et les règlements qui en découlent. Par la présente, j'autorise la divulgation, par le détenteur, de tous renseignements requis par l'Agence des services frontaliers du Canada et nécessaires pour déterminer si j'ai les qualités voulues pour devenir courtier en douane agréé.</p>		
Signature of qualified officer - signature de l'agent compétent		Date
Do not use this area		
This table is to be completed by the region prior to forwarding to Broker Licensing		N'inscrivez rien ici Cette section doit être remplie par la région avant d'être soumise aux Programmes d'agrément des courtiers et des compte-garantis
The incorporation documents are attached (if applicable) - Ci-joint se retrouve (si pertinent) l'intégration des documents		
Amendments to incorporation documents are attached (for changes of legal business name) - Ci-joint se retrouve les modifications à l'intégration des documents (aux fins de changer le nom commercial légal)		
Security is attached - La garantie est ci-jointe		
Minutes/Resolutions of shareholders meetings (for appointment of directors) - Procès-verbal/Résolutions de l'assemblée des actionnaires (pour la nomination d'un administrateur)		
Minutes/Resolutions of meetings of board of director (for appointment of qualified officer) - Procès-verbal/Résolutions du conseil d'administration (pour la nomination d'un dirigeant qualifié)		
Financial documents are attached - Les documents financiers sont ci-joints		
L60 questionnaires and investigation are attached (for appointment of directors, qualified officers and qualified persons) - Le formulaire L60 et les enquêtes sont ci-joints (pour la nomination des administrateurs, dirigeants qualifiés)		
Approval of the Regional Director of Customs Border Services - Approbation du Directeur Régional		
Please check only one box - Veuillez cocher une seule case		
<input type="checkbox"/> I do not know of any reason why a licence should not be granted to the applicant. Je ne connais pour de raisons pour lesquelles une licence ne devrait pas être accordé au demandeur.		
<input type="checkbox"/> I have reservation about this application (see attached). J'ai des inquiétudes à l'égard de cette demande (voir ci-joint).		
		Signature of Regional Director - Signature du Directeur Régional

부록 13 캐나다 관세사 설문지(앞면)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Agence des services frontaliers du Canada		Help / Aide	PROTECTED / PROTÉGÉ A when completed / une fois rempli	
Criteria - Critères		CUSTOMS BROKER QUESTIONNAIRE QUESTIONNAIRE À L'INTENTION DES COURTIER EN DOUANE		Reset/Restaurer
This form is to be completed by all newly appointed qualified officers, partners and directors.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box. Ce formulaire doit être rempli par tout dirigeant qualifié, partenaire et directeur nouvellement nommé. Veuillez cocher la case appropriée.				
<input type="checkbox"/> Qualified officer / Dirigeant qualifié		<input type="checkbox"/> Partner / Partenaire		<input type="checkbox"/> Director / Directeur
Name - Nom Date of birth - Date de naissance Y - A M D - J	Are you a Canadian citizen and/or a permanent resident of Canada? / Êtes-vous citoyen canadien/résident permanent du Canada? <input type="checkbox"/> Yes / Oui <input type="checkbox"/> No / Non			
Home (principal) address - Adresse (principale) personnelle		Day telephone number - Numéro de téléphone pendant la journée ()		
		Evening telephone number - Numéro de téléphone pendant la soirée ()		
Name of brokerage firm - Nom de la maison de courtage		Facsimile number - Numéro de télécopieur ()		
		E-mail address - Adresse courriel		
Please indicate below any customs broker examinations you have passed together with the appropriate date. Veuillez indiquer ci-dessous tout examen de courtier en douane que vous avez réussi ainsi que la date appropriée.				
<input checked="" type="checkbox"/> Customs Brokers Professional Examination - Examen de compétences professionnelles des courtiers en douane		Y - A M D - J		
<input type="checkbox"/> Customs Brokers Departmental Examination (prior to November 1986) - Examen ministériel des courtiers en douane (avant novembre 1986)		Y - A M D - J		
Please indicate below your relevant employment history. The CBSA reserves the right to contact these employers for references. (To be completed only by the qualified officers.) Veuillez indiquer ci-dessous vos antécédents professionnels pertinents. L'ASFC se réserve le droit de communiquer avec ces employeurs pour vérifier les références. (À être rempli uniquement par les dirigeants qualifiés.)				
Customs broker and location - Courtier en douane et emplacement		Date from - Date de début Y - A M D - J	Date to - Date de fin Y - A M D - J	
		Y - A M D - J	Y - A M D - J	
		Y - A M D - J	Y - A M D - J	
		Y - A M D - J	Y - A M D - J	
The Customs Brokers Licensing Regulations require that individuals, qualified officers, partners and directors be of good character; and partnerships and corporations licensed to transact business as customs brokers, be of good character/reputation. Please complete the following: Le Règlement sur l'agrément des courtiers en douane exige que les personnes, dirigeants qualifiés, partenaires et directeurs jouissent d'une bonne réputation et que les sociétés de personnes et sociétés par actions agréés pour faire des transactions à titre de courtier en douane jouissent d'une bonne réputation. Veuillez remplir la section suivante :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a criminal offence for which you have not received a pardon?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Avez-vous déjà été reconnu coupable pour un acte criminel pour lequel vous n'avez pas été réhabilité? Dans l'affirmative, veuillez préciser.				<input type="checkbox"/> Yes / Oui <input type="checkbox"/> No / Non
Have you ever declared bankruptcy?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 Avez-vous déjà fait une déclaration de faillite? Dans l'affirmative, veuillez expliquer.				<input type="checkbox"/> Yes / Oui <input type="checkbox"/> No / Non
I declare tha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the information given in this application is true. I make this declaration knowing it is of the same importance as if made under oath and by virtue of the Canada Evidence Act. I hereby authorize the release, by the custodian thereof, of any information required by the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that is necessary in the determination of my suitability to become a licensed customs broker.		Je déclare que les renseignements que contient la présente demande sont, à ma connaissance, véridiques. Je fais cette déclaration sachant qu'elle a la même importance que si elle était faite sous serment en vertu de la Loi sur la preuve au Canada. Par la présente, j'autorise la divulgation, par le détenteur, de tous renseignements requis par l'Agence des services frontaliers du Canada et nécessaires pour déterminer si j'ai les qualités voulues pour devenir courtier en douane agréé.		
Signature		Date		

부록 14 캐나다 관세사 설문지(뒷면)



**CRITERIA TO BE MET BY INDIVIDUALS WHO INTEND TO TRANSACT BUSINESS AS CUSTOMS BROKERS
AND BY DIRECTORS OF LICENSED CORPORATIONS
CRITÈRES QUE DOIVENT RESPECTER LES PERSONNES AYANT L'INTENTION DE FAIRE DES TRANSACTIONS À TITRE DE
COURTIER EN DOUANE ET LES DIRECTEURS DE SOCIÉTÉS PAR ACTIONS AGRÉÉES**

The *Customs Brokers Licensing Regulations* require that any individual who transacts business as a customs broker and all directors of licensed corporations meet certain criteria.

Individuals who transact business as customs brokers must meet all the requirements of these Regulations and be approved by the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Professional status is required of an individual who intends to apply for a customs broker licence either on his or her own behalf (as a sole proprietor), on behalf of a partnership or on behalf of a corporation. Applicants applying for a licence on behalf of a corporation must also be appointed as an "officer" of that corporation. "Officers" of corporations must be appointed by the directors of a corporation.

In order to be approved by the CBSA an individual must meet the following:

- be a citizen or a permanent resident of Canada;
- be of good character;
- be at least 18 years old;
- have passed the Customs Brokers Professional Examination; and
- apply for a customs broker licence on his/her own behalf or be appointed as an officer of a corporate applicant.

Directors of a corporate applicant for a customs brokers licence must meet the following:

- be of good character; and
- be at least 18 years old.

The majority of the directors must be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of Canada.

Directors of a corporate applicant must be appointed by the shareholders.

Loss of Status

Professional status may be lost if the individual holding such status has a break in employment as a customs broker. Please consult the CBSA's Memorandum D1-8-1, *Licensing of Customs Brokers*, for details.

Individuals who lose their professional status because of such a lapse may regain it by passing the Customs Brokers Professional Examination.

Le *Règlement sur l'agrément des courtiers en douane* exige que toute personne qui fait des transactions à titre de courtier en douane et que tout directeur d'une société par actions agréée respectent certains critères.

Les personnes faisant des transactions à titre de courtier en douane doivent satisfaire toutes les exigences de ce règlement et être agréées par l'Agence des services frontaliers du Canada (ASFC).

Le statut professionnel est exigé d'une personne qui a l'intention de demander l'octroi d'un agrément de courtier en douane pour elle-même (en tant que propriétaire unique), au nom d'une société de personnes ou au nom d'une société par actions. Tout requérant déposant une demande au nom d'une société par actions doit également être « agent » de cette société par actions. Un « agent » d'une société par actions doit avoir été nommé par le directeur de cette société.

De façon à obtenir l'approbation de l'ASFC, une personne doit :

- être citoyenne ou résidente permanente du Canada;
- jouir d'une bonne réputation;
- être âgée d'au moins 18 ans;
- avoir réussi l'Examen de compétences professionnelles des courtiers en douane;
- avoir déposé une demande d'agrément de courtier en douane en son propre nom ou avoir été nommée agent d'une société par actions requérante.

Les directeurs d'une société par actions demandant l'octroi d'un agrément de courtier en douane doivent :

- jouir d'une bonne réputation;
- être âgés d'au moins 18 ans.

La majorité des directeurs doivent être citoyens ou résidents permanents du Canada.

Les directeurs d'une société requérante doivent avoir été nommés par les actionnaires de celle-ci.

Perte de statut

Le statut professionnel peut être révoqué si une personne détenant un tel statut subit une interruption d'emploi à titre de courtier en douane. Veuillez consulter le Mémoire D1-8-1 de l'ASFC, *Agrement des courtiers en douane*, pour de plus amples informations.

Les personnes dont l'agrément est révoqué société par actions en raison d'une telle interruption peuvent l'obtenir de nouveau en réussissant l'examen de compétences professionnelles des courtiers en douane.

Return to form

Retour au formulaire

관세연구 12-04

주요국의 관세사 제도 운영 현황

2012년 12월 21일 인쇄

2012년 12월 27일 발행

저 자 정재호 · 김수영 · 김미영

발행인 조원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1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2

ISBN 978-89-8191-641-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